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

2004. 6

김 해 식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머리말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겪어왔습니다. 구조조정을 거치고 난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시장의 통합'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이 부실을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진 제도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치중해왔다면, 그 기반 위에서 여러 갈래의 시장들을 하나로 묶는 규율과 기준을 만들어내자는 통합의 이슈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4년 3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재무보고기준 제4호 보험계약(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4. Insurance Contracts)이라는 명칭으로 국제보험회계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1999년 보험계약에 대한 현안보고서를 내놓은 지 5년만의 일입니다. 비록 보험부채인 준비금의 산출 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임시기준이기는 하지만 보험회계의 국제적 단일기준이 사상 처음으로 등장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보험회계기준이 부분적인 임시기준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은 세계 각국의 매우 다양한 보험회계 관행의 존재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제기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고 있는 다양한 회계관행들의 주된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 보험회계의 모범이 되어왔던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의 회계관행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우리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회계관행들을 비교하고, 그 유형을 분류한 결과를 이번 보고서에 담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원은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제정 추이와 그 변화에 대하여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1년 연구보고서가 국제보험회계기준의 핵심 쟁점들을 분석한 것이었다면, 이번 보고서는 그 쟁점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각 나라별 보험회계관행들의 차이를 살펴 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조사보고서가 보험산업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조사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연구자는 물론 이기형 연구조정실장과 생명보험본부의 정근환 선임이 연구자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 모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2004년 6월

원장 임 재 영

요 약

Ⅰ. 서론

□ 이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보험회계관행을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o 그동안 보험회계에 대한 관심은 주로 미국의 보험회계에 집중되어 왔음.

o 그러나 글로벌스탠더드의 모범이 미국의 회계기준(US GAAP)에서 국제기준(IAS or IFRS)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보다 다양한 회계관행들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음.

o 또한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국내 회계기준의 정비작업도 국제기준을 그 모범으로 하고 있어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꾸준한 관찰이 요구됨.

Ⅱ. 보험회계의 환경

□ 대다수의 나라들은 일반회계기준(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의 제정 기능을 민간기구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남.

□ 보험회계 체제는 감독당국에 제출할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할 회계기준으로서 감독회계기준(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s; SAP) 등을 별도로 운용하는 형태와 일반회계기준(GAAP)을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형태로 분류될 수 있음.

o GAAP과 SAP의 구분은 투자정보와 지급능력정보 중 어느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o 일반적으로 감독당국의 니드가 GAAP에 반영되고 있는 경우, GAAP에 따라 작성된 재무정보는 투자정보는 물론 감독정보로도 사용되고 있음.

Ⅲ.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

□ 자산의 인식에 있어서 일반기업과 보험사간에 차별은 없음.

o 그러나 자산의 장부상 금액을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있어서는 투자자산의 형태(운용자산의 형태)별로 국가에 따라 공정가치와 저가법을 적용하는 경우로 대별될 수 있음.

o 자산가치의 영구적 하락을 의미하는 감액손실이 발생할 경우 자산의 감액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 부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나, 크게 보험상품의 최초 설정되었던 기초율을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하여 보험부채를 산출하는 경우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매기마다 기초율을 변경하여 보험부채를 산출하는 경우로 대별될 수 있음.

o 전자가 대다수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는 발행년도방식의 보험부채 산출방법이나, 국제보험회계기준은 매기 새롭게 부채를 측정하는 후자를 채택하고 있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음.

Ⅳ. 보험회계모형

□ 보험회계모형은 보험부채를 산출하는 보험상품의 각종 기초율 설정과 관련하여 크게 영국계와 미국계의 회계모형으로 대별됨.

o 국제기준은 모형의 가정(기초율)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강조함.

o 영국계의 회계모형이 공정가치회계모형에 가장 근접하고 있음.

Ⅴ. 국제기준과 국가별 비교의 시사점

□ 국제보험회계기준(IFRS 4)은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핵심 골격은 “공정가치(fair value)”에 의한 회계기준임.

o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보험회계 제정과 함께 IAS 39의 개정 결과를 동시에 제시한 바 있음.

- 국제기준 제39호(IAS 39),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IFRS 4호가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보험사는 자산과 일반부채에 대해서는 IAS 39를, 보험부채에 대해서는 IFRS 4를 적용하게 되는 것임.

□ 미국의 회계기준을 모범으로 삼고 있는 국내 보험회계는 보험부채의 공정가치회계 기조와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음.[1)]

o 자산 측면에서 국내 보험회계는 공정가치 회계에 근접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국제기준이 추구하는 자산의 인식·측정 기조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것임.

o 한편, 부채 측면에서 국제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공정가치 회계모형에 완전히 부합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음.

- 다만,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국계의 회계관행이 국제기준에 근접하고 있는 반면, 미국 보험회계와 맥을 같이하는 국내 보험회계는 보수적인 입장에 있음.

o 따라서 공정가치 접근방식에 대한 연구와 공정가치회계의 국내 보험시장 적용 방안이 최종적인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등장에 대비하여 실무적이고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이 보고서의 분석은 1999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실시한 국가별 보험회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보고서에서

---

1) 국제보험회계기준의 핵심인 보험부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이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김해식(2001) 또는 보험개발원 CEO Report(2004) 참조.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국가들의 최근 현황은 2002년 자료를 토대로 보완되었음.

- 각 국가별 회계기준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반면, 본 보고서는 1999년 설문조사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비교분석에 있어서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근본적인 제약이 존재하고 있음.
- 이를 극복하고자 2002년 국가별 현황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하였으나, 보험부채 등 보다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999년 조사자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Ⅱ. 각국의 보험회계 환경 ····· 4
1. 보험회계기준의 제정기관 ····· 4
2. 보험사의 재무보고 ····· 7
3. 보험부채의 측정과 보험계리사 및 회계사의 역할 ····· 11

Ⅲ.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 ····· 16
1. 보험사의 자산 ····· 16
2. 자산의 회계처리 기준 ····· 24
3. 분리계정 ····· 35
4. 보험사의 부채 ····· 37

Ⅳ. 보험회계모형 ····· 49
1. 보험계약의 성격 ····· 49
2. 회계모형의 측정방식 ····· 51

Ⅴ. 국제기준과 각국별 비교의 시사점 ····· 61
1. 국제기준의 흐름 ····· 61
2. 국내 보험회계에 대한 시사점과 분석의 한계 ····· 63

참고 문헌 ····· 65

[부록 1]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추진 경과 ····· 66
[부록 2]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의 의견서 ····· 68
[부록 3] IFRS 4. Insurance Contract의 내용 ····· 82

표 차례

< 표 Ⅱ-1 > 일반회계기준의 제정기관 ····· 4
< 표 Ⅱ-2 > 감독당국에 대한 재무보고서 작성 기준 ····· 7
< 표 Ⅲ-1 > 신계약비의 회계처리 ····· 17
< 표 Ⅲ-2 > 신계약비의 감액 기준의 명시 ····· 20
< 표 Ⅲ-3 > 재보험미수금의 표시 ····· 22
< 표 Ⅲ-4 > 채무증권의 장부상 금액의 표시기준 ····· 24
< 표 Ⅲ-5 > 채무증권의 처분손익의 표시 ····· 27
< 표 Ⅲ-6 > 채무증권의 평가손익의 표시 ····· 28
< 표 Ⅲ-7 > 지분증권의 장부상 금액의 표시기준 ····· 29
< 표 Ⅲ-8 > 지분증권의 처분손익 표시 ····· 30
< 표 Ⅲ-9 > 지분증권의 평가손익의 표시 ····· 31
< 표 Ⅲ-10 > 대출의 장부상 금액의 표시기준 ····· 31
< 표 Ⅲ-11 > 대출의 처분(실현)손익 표시 ····· 32
< 표 Ⅲ-12 > 대출의 평가(미실현)손익 표시 ····· 33
< 표 Ⅲ-13 > 투자부동산의 장부상 금액의 표시기준 ····· 33
< 표 Ⅲ-14 > 투자부동산의 처분(실현)손익 표시 ····· 34
< 표 Ⅲ-15 > 투자부동산의 평가(미실현)손익 표시 ····· 34
< 표 Ⅲ-16 > 변액보험 등의 분리계정 적용 여부 ····· 35
< 표 Ⅲ-17 > 단기계약의 보험료 인식 ····· 37
< 표 Ⅲ-18 > 단기계약의 보험금 인식 ····· 38
< 표 Ⅲ-19 > 단기계약 보험금의 현재가치 ····· 40
< 표 Ⅲ-20 > 손해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인식 ····· 42
< 표 Ⅲ-21 > 소급재보험특약의 손익 인식 ····· 45
< 표 Ⅲ-22 > 재보험 회계처리 ····· 47
< 표 Ⅲ-23 > 장기계약의 보험료 인식 ····· 47
< 표 Ⅳ-1 > 보험리스크가 거의 없는 보험계약 ····· 50
< 표 Ⅳ-2 > 현금흐름 측정 ····· 52
< 표 Ⅳ-3 > 보험부채의 계산방식 ····· 56
< 표 Ⅳ-4 > 이익의 발생원천 ····· 57
< 표 Ⅳ-5 > 할인율의 근거 ····· 58

< 표 Ⅳ-6 > 기초율 변동의 인식 여부 ····· 59
< 표 Ⅳ-7 > 실적손익의 효과 ····· 60

< 별표 1-1 > 국제보험회계기준 추진 현황 ····· 66
< 별표 2-1 > IFRS 초안 - 보험회계의 범위 ····· 71
< 별표 2-2 > IFRS 초안 - 보험계약의 정의 ····· 72
< 별표 2-3 > IFRS 초안 - 내재 파생상품 ····· 74
< 별표 2-4 > IFRS 초안 - IAS 8의 적용 배제 ····· 75
< 별표 2-5 > IFRS 초안 - 회계정책의 변경 ····· 76
< 별표 2-6 > IFRS 초안 - 보험계약의 분리 ····· 76
< 별표 2-7 > IFRS 초안 - 재보험계약 ····· 76
< 별표 2-8 > IFRS 초안 - 기업합병이나 계약이전의 보험계약 ····· 77
< 별표 2-9 > IFRS 초안 - 배당 특성 ····· 77
< 별표 2-10 > IFRS 초안 - 공정가치 공시 ····· 78
< 별표 2-11 > IFRS 초안 - 기타 공시 사항들 ····· 79
< 별표 2-12 > IFRS 초안 - 금융보증 ····· 80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 본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보험회계관행을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o 그동안 보험회계에 대한 관심은 주로 미국의 보험회계에 집중되어 왔음.

- 이는 미국이 글로벌스탠더드를 주도하여 왔고, 현재의 국내 보험회계도 많은 부분 미국 회계기준을 모범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o 그러나 글로벌스탠더드의 모범이 미국의 회계기준(US GAAP)에서 국제기준(IAS or IFRS)으로 바뀌고 있어 세계 여러 국가의 보다 다양한 회계관행들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음.

- EU는 국제회계기준을 2005년부터 역내 국가들의 7,500여 상장기업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여 국제기준의 위상이 과거와 달리 급부상하고 있음.
- EU권 밖에 있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등도 여기에 동참을 선언함.[2)]

o 또한 국내 회계기준의 개정 작업도 국제기준을 그 모범으로 하고 있어 보험회계의 개정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세계 각국의 다양한 회계관행을 단편적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은 보험회계의 세계적 추세와 국제기준의 이해를 제고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튼튼한 토대가 될 것임.

---

2) IASB(2004).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연구의 범위는 비교대상 국가들의 보험회계 제정 및 적용 환경에 대한 부분과 주요 항목별 보험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대상으로 함.

o 이에 따라 먼저 보험회계의 제정기관, 감독기관에 대한 재무보고, 회계사와 보험계리사의 역할 등 보험회계의 환경을 살펴보고,

o 구체적인 보험회계의 내용에 있어서는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중요한 항목들의 회계처리를 비교하고자 함.

o 따라서 국제보험회계기준이 주로 다루는 보험부채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이나 다른 금융기관과 중복될 수 있는 자산의 회계처리도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였음.

□ 지난 2004년 3월 공표된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재무보고기준 제4호(IFRS 4)」[3]가 제정되기까지 논의되었던 이슈들을 중심으로 각국별 일반회계기준(GAAP)을 비교함.

o IFRS 제4호 이전까지는 세계 공통의 보험회계기준은 존재하지 않았음.

- 보험회계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 것은 1999년 IASC(현 IASB)[4]가 발간한 「보험계약의 회계처리에 대한 현안보고서(Issues Paper on Insurance Contracts)」가 최초라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동 보고서에서는 보험회계에 대한 거의 모든 현안들이 논의되었으며, 각국별 설문조사 결과[5]도 이 때 조사되었음.

---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1973년부터 2001년까지 국제회계기준(IAS)을 공표해 왔으나, 2001년 4월부터 국제회계기준을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으로 변경하여 지칭함. 이에 따라 기존의 상임해석위원회(SIC)를 국제재무보고해석위원회(IFRIC)가 대신하여 국제회계기준해석을 공표함. 자세한 사항은 'www.iasb.org/standards/index.asp' 참조.

4)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는 2001년 4월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로 개칭하고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바 있음.

5) 설문조사 결과는 17개국에 대하여 주요 이슈별 질의-응답 형식으로 그 내용

o 이 보고서는 IASC가 1999년 실시한 국가별 보험회계 설문조사 결과를 주된 근거자료로 삼고, 2002년의 '보험세제의 국가별 비교' 자료 등의 각국별 현황을 반영하여[6] 내용을 보완함.

- 설문조사를 주된 근거로 삼은 이유는 그 내용이 보험사의 회계처리 전반을 다루고 있어 보험과 관련된 국제기준 및 2005년 이후의 국제기준 개정 방향[7]에서 주목해야 할 사안들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임.
- 설문조사 자료의 시간적 괴리는 PwC의 2002년 자료 등을 참고하여 보완하였음.

□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캐나다, 미국과 한국 등 8개국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여 국가별 보험회계 현황을 비교함.

o 이 보고서의 토대가 되고 있는 IASC의 설문조사는 세계 17개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나, 논의 전개에서는 선진 7개국과 우리국가를 비교하는 것으로 한정하였음.[8]

o 선진 7개국으로 비교 대상을 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보험회계의 세계적 흐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국가들을 비교 대상으로 추출하되,
- 둘째, 보고서가 주된 근거로 삼고 있는 IASC의 자료가 1998년까지의 답변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변화가 많은 회계관행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시간적 괴리를 메워 줄 최근 자료의 확보가 용이한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

은 '보험계약에 대한 현안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음. IASC(1999)의 [부록B].

6) 비교대상 국가들의 최근 현황은 PwC (2002) 자료를 참고하였음.

7) 현재 제정된 IFRS 4호는 임시기준이어서 2005년 이후 개정될 예정임. [부록1] 참조.

8) 1999년 써베이 자료에서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 17개국임(밑줄 표시는 보고서에서 채택한 비교대상 국가들임).

Ⅱ. 각국의 보험회계 환경[9)]

1. 보험회계기준의 제정기관

□ 보험에 대한 일반회계기준(GAAP)의 제정기관 현황은 크게 (1)독립기관이 기준을 정하는 형태와 (2)정부 및 보험감독기관이 기준을 정하는 형태로 구분될 수 있음(<표 Ⅱ-1> 참조).

o 독립된 기준제정기관(independent standard setter)이나 회계전문인 및 관련 기관이 기준을 제정하는 (1)과 같은 형태에 속하는 국가에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고 한국 등 대다수 국가가 이 유형에 속함.

< 표 Ⅱ-1 > 일반회계기준[10)]의 제정기관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 독립기관	●	●	●		●	●	●	●
(2) 감독당국 등				●				

o (1)의 형태에는 다시 해당 회계기준을 감독기관과 공유하는 형태(a)가 있는가 하면, 감독회계기준(Statutory Accounting Practices; SAP)이 따로 정해지고 있는 형태(b)가 있음.

- 프랑스가 (a)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기준 제정단계에서 정부의 니드를 반영함.
- 한편, 미국은 (b)의 사례이며, 캐나다와 한국도 여기에 속함.

---

9) 이하에서 전개되는 논의들은 IASC(1999)의 내용을 주된 근거로 하고 있으며, PwC(2002) 등을 참고로 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또는 주석에서 언급하기로 함.

10) 일반기준(GAAP)은 주주, 투자자 등에게 제공될 대외보고(external reporting)용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근거가 되는 회계기준을 말함.

o (2)의 형태는 보험사의 지급능력을 감시하거나 소비자보호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감독기관이 전적으로 보험회계기준을 정하고 있는 형태임.
- 독일 등이 여기에 속함.

□ 캐나다

o 회계기준위원회(AcSB;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 보험에 대한 일반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있음.
o 금융감독청(OSFI)은 보험사에게 일반회계기준(GAAP)에 우선하는 별도의 보험회계기준을 제시할 수 있음.

□ 프랑스

o 회계기준위원회(CNC)에서 보험회계기준을 제정함.
- 프랑스의 회계기준위원회는 민간기구가 아닌 공공기관이라는 특징을 지님.[11)]
o 회계기준은 보험규제위원회(Comitè de la régulementation des assurances)의 의견 반영과 승인을 거쳐야 함.
o 일반보험사, 상호회사, 비영리법인 모두에게 보험회계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동 기준은 보험법의 일부로 포함됨.

□ 한국

o 한국회계기준위원회(KASB)에서 보험회계기준을 정함.
-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사에 대한 일반회계기준과 구분되는 별도의 감독회계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두 기준에 의한 재무보고서간에는 실질적 차이가 없음.

11) FEE(2000).

□ 일본

o 일본은 기업회계기준위원회(ASBJ; Accounting Standards Board of Japan)가 2001년 설립되어 기업회계기준을 마련.

- 금융청의 기업회계심의회에서 회계기준을 심의하여 기준이 최종적으로 제정됨.

□ 독일

o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에서 보험에 대한 일반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있음.

o 회계기준위원회(GASB; German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법무부의 기준제정 과정에서 자문기능을 수행함.[12)]

12) 우리국가를 포함하여 대다수 회계기준제정기관은 명확한 적용을 위해 긴급현안에 대한 지침과 해석을 제공하는 활동(urgent issues task force activity)을 수행하나, 독일의 GASB는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지는 않음. FEE(2000), pp. 6-7.

2. 보험사의 재무보고

□ 보험사의 재무보고는 (1) 일반회계기준(GAAP)에 근거하여 작성된 재무보고서를 감독당국에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하거나 별도 서류를 첨부하는 형태와 (2) 감독당국에게는 별개의 회계기준(SAP)을 적용하여 재무보고를 하는 형태가 있음.

o 통상적으로 감독당국의 경우 지급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하기 때문에 자산 등의 가치측정에서 일반회계기준과 다른 감독회계기준을 설정하는 경우가 흔히 있음.

o 따라서 보험사의 재무보고는 크게 (1) GAAP에 의한 보고서를 기본으로 하여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형태와 (2) SAP 등 별개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보고하는 형태로 나타남(<표 Ⅱ-2> 참조).

< 표 Ⅱ-2 > 감독당국 제출 재무보고서 작성 기준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 GAAP 적용	●		●		●			
(2) SAP 적용		●		●		●	●	●[1)]

주: 1) 한국의 경우 감독규정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와 일반회계기준인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작성된 보고서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나, 형태상으로는 감독회계기준이 따로 존재하므로 (2)로 구분함.

o GAAP에 의거하여 작성된 보고서를 기본으로 감독당국에 재무보고하고 있는 (1)의 형태에는 호주, 프랑스, 일본이 속하는 반면, 캐나다 등 (2)의 형태에서는 GAAP과는 별도의 회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있음.

□ 호주

o 보험사는 GAAP에 따라 작성된 재무보고서를 수정하여 감독당국(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PRA)에 보고함.

o 감독당국은 보험사에 적용할 회계규정을 제정하고, 생명보험계리기준위원회(LIASB)는 계리기준을, 회계기준위원회(AASB)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회계기준을 제시함.

- 산업 초점의 감독회계기준과 보험계리적 관점의 계리기준 모두 지급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일반회계기준은 투자자 보고 목적의 재무보고와 관련된 것임.

o 손해보험사의 경우, 예를 들면, 보험금진전(claim development) 상황을 종목별로 감독당국에 공시.

o 생명보험사는 회사법과 GAAP에 따라 재무보고를 하나,

- 감독당국(APRA)에 대한 재무보고는 LIASB에서 정한 규정들에 근거하고 있음.
- 이 경우 일반회계기준(AASB 1038)과 감독규정 및 계리기준(LIASB)에 근거한 단일 재무보고가 가능한데, 이는 배당계약의 배당처리 조정으로 가능함.

□ 일본

o 감독당국에 제출되는 서류가 보다 상세하지만, 호주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기준에 근거하여 보고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함.

- 일반회계기준은 상법과 유사한 보험업법의 감독회계기준(SAP)의 영향을 받아 일반회계기준과 감독회계기준은 상호조화를 이룸으로써 별개의 기준들로 여겨지지 않음.[13)]

13) 이는 1999년 자료에 기초한 것임.

□ 프랑스

o GAAP에 의한 재무제표와 함께 감독목적의 세부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고 있음.

o 감독 목적에서 특별히 정한 기준들을 적용하여 조정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음.

- 책임준비금(technical reserves)
- 보험목적의 보유자산 : 가치평가와 분류
- 외화표시 영업(foreign currency operations)
- 재무제표의 형식과 표시

□ 캐나다

o 보험사는 다양한 재무보고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하여야 함.

o 금융감독청(OSFI)은 보험사가 회계기준위원회(AcSB)가 정한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따로 정한 회계규정을 보험사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도 포함되지만, 일반회계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일반회계기준과 다른 표시와 공시를 요구하는 보고서도 있음.
- 감독당국에 제출되는 보고서는 추가적인 재무정보가 포함됨.

□ 독일

o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에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o 보험사는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추가적인 공시자료를 제공함.

□ 영국

o 일반목적의 재무보고와 감독목적의 재무보고는 차이가 있음.

o 감독목적의 보고자료는 특정 형식과 함께 일반회계기준과 다른 가치평가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됨.

o 지급능력 측정을 목적으로 GAAP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일부 수정함.

- 자산과 부채의 가치 측정이 상이함을 반영하여 조정.

o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감독당국 제출서류의 가치평가규정은 일반 회계기준보다 보수적인 것이 일반적임.

o 손해보험의 경우 부채의 가치평가는 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규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 미국

o 보험사는 연차계산서를 NAIC양식에 따라 주 보험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함.

o 감독당국은 별도의 감독회계기준(SAP)과 계리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GAAP에 의한 재무보고와 차이를 보임.

o 각 주는 감독회계기준을 정하는 주법을 채택하고 있음.

- 현재 감독회계기준(SAP)은 각 주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동일 주 내에서도 적용 대상 보험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14)]

14) 최근 NAIC는 감독회계기준의 조문화(codification) 작업을 추진하여 각 주가 이를 채택하도록 적극 권하고 있음. 이 작업의 목적은 모든 주에 하나의 통일회계기준을 제공하여 보험사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용이하게 분석하고 보험전문가들에게 공통된 분석 원천을 제공하는 데 있음.

3. 보험부채의 측정과 보험계리사 및 회계사의 역할

□ 호주

o 재무제표 작성은 손해보험사의 경우 일반회계기준 1023호(이하 AASB 1023), 생명보험사의 경우 일반회계기준 1038호(AASB 1038)에 따라 부채가 표시되어야 함.

- 여기에는 책임준비금도 포함됨.

o 손해보험사는 책임준비금 측정에 보험계리사를 활용할 의무는 없지만, 사고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보험(long-tail business)에서 보험계리사가 없이 AASB 1023호를 적용하기는 어려움.

o 생명보험사에서는 책임준비금의 측정과 지급능력보고서에 기재되는 금액에 대하여 담당이사에게 권고할 책임을 지는 선임계리사(appointed actuary)가 반드시 있어야 함.

- 책임준비금 금액은 일반목적 보고서(GAAP적용 재무보고서)에도 영향을 주는 것임.

□ 캐나다

o 회계사는 측정기준을 제시하고, 보험계리사는 동 기준을 적용하여 책임준비금을 산출함.

o 보험계리사회(CIA)는 계리적 측정기준을 개발하는 절차를 정해놓고 있음.

- 필요한 경우 회계전문가와 상담할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음.

o 실무에서는 보험계리사가 대부분의 보험관련 부채의 세부 계산을 수행함.

- 회계사는 보험계리사의 작업결과를 회계장부에 기록하고 부채금액과 관련 주석으로 공시사항들을 재무제표에 반영함.

o 독립감사인(회계사)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서 보험부채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음.

o 회계감사기준(Generally Accepted Audit Standards)에 따라 감사인은 보험계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o 생명보험사는 법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리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

- 선임계리사(appointed actuary)[15]는 매년 주주·계약자들에게 재무제표에 반영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보고할 책임이 있음.
- 선임계리사는 의견 제시에서 외부 감사인 및 다른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외부 감사인은 선임계리사가 사용한 시스템과 데이터에 대하여 감사 절차를 수행함.[16]
- 선임계리사는 감독당국에게 제시한 기타 정보에 대해 세부 보고를 할 책임이 있음.

□ 프랑스

o 보험부채 설정은 경영진의 책임이며, 감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o 보험부채를 측정함에 있어서 회계사(감사인)는 보험계리사의 도움을 받아 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보고할 책임이 있음.

o 특히 보험계리사는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사용된 이자율을 보험료에 반영된 이자율과 일치되도록 할 책임이 있음.

- 최대 이자율은 계약기간과 계약형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
- 보험계리사는 규정에 정해진 대로 계약 형태에 따라 사망률 표를 사용할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독립계리사가 인정한 사망률 표를 사용할 수 있음.

□ 독일

o 보험감독법 제11조제3문단에 의하여, 생명보험의 책임계리사는 보험료와 준비금 계산에서 동 규정이 준수되고 있음을 확인함.

---

15) 보험사 내에서 직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음.
16) 감사절차는 회기말 정기감사와 비교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짐.

- 보험계리사는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이 합리적인 기초율에 근거하여 계산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는 보험사가 모든 부채에 대응할 수 있고, 특히 개별 계약에 대하여 충분한 준비금을 설정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임.

o 책임계리사는 보험감독법 제65조제1문단과 상법 제341f조의 책임준비금에 대한 규정이 준수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 금리보장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감독법 제65조제1문단에서 하나 이상의 최고 이자율을 정하고 있으며, 질머식의 최고 금액과 EU지침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준비금의 계리적 계산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상법 제341f조에서는 생명보험의 책임준비금을 설정하는 데에 전진법을 적용하되,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급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계리사는 보험사의 재무상황이 보험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여야 함.
- 위와 같은 사항들은 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 대체 건강보험, 일반배상책임 및 자동차배상책임과 상해보험, 환급금이 없는 상해보험의 연금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 계산에도 적용될 수 있음.

□ 일본

o 보험사는 매 회계연도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에 영업성과와 자산상태를 기술하여 이를 금융청장에게 제출함.

o 또한 보험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영업성과와 자산에 대한 세부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들 자료를 본사, 대리점 등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함.

o 보험사가 선임한 보험계리사는 결산 시에 책임준비금이 건전한 계리방식에 따라 적립되었는지, 계약자배당 지급과 잉여금의 배

분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

- 또한 선임계리사는 이사회에 점검 결과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본을 금융청장에게 제출.

o 외부 감사인은 결산 시에 재무제표가 진실하고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

- 감사의 범위에는 보험부채가 포함됨.
- 감사의견은 보험계리사의 의견과 독립적인 것이어야 함.

□ 영국

o 보험사는 보험회사법[17]에 따라 일련의 책임을 질 보험계리사를 선임해야 함.

o 선임계리사는 보험부채에 대하여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청에 별도의 계리보고서를 제출함.

o 일반목적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계리보고서가 강제사항이 아님.

- 손해보험의 준비금에 대하여도 보험계리사의 보고의무는 없음.

□ 미국

o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보험부채를 포함한 추정치에 대한 책임이 있음.

o 회계사는 부채를 계리적으로 계산하는 데 사용된 재무데이터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계리사는 계산·추정의 책임을 짊.

- 보험부채의 결정은 복잡하며, 많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므로 회계사와 보험계리사의 협력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됨.

o 보험사는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에서 보험부채와 관련하여 계리의견서(statement of actuarial opinion)를 제출해야 함.

---

17) 영국의 보험회사법은 다른 금융관련 법률들과 함께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law)'으로 통합되었음. 그러나 본문에서는 바뀐 금융서비스시장법을 확인하지 않았기에 보험회사법을 그대로 사용함.

o 일반목적의 회계 및 감사 지침에 의하면, 생명보험사는 외부의 독립 계리사를 선임하여 준비금, 이연신계약비, 기타 계리적 산출 금액을 감사토록 해야함.

- 손해보험사에 대한 기준(SOP 92-4)에 의할 때도 유사함.

□ 한국

o 보험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최종적인 검증과 확인을 담당할 보험계리사를 선임하여야 함.

- 선임된 보험계리사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보험부채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짊.

o 회계사는 GAAP과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회계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

o 재무제표는 독립감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Ⅲ.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

1. 보험사의 자산

가. 대차대조표에서 인식되지 않는 자산

□ 일반기업에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항목은 보험사의 대차대조표에서도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o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데이터처리시스템과 같은 고정자산, 이연법인세, 기업인수에 따른 영업권(goodwill) 등에 해당되는 자산 항목들이 감독목적상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음.

- 즉 일반회계기준(GAAP)과 가치측정(valuation)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감독회계기준(SAP)에서는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항목들이 나타나고 있음
- 미국 감독회계기준의 비인정(non-admitted) 자산 항목들이 대표적인 사례임.

나. 신계약비를 자산으로 인식

□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데 들어간 초기비용인 신계약비는 보험부채 측정과 맞물려 당기비용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o 회계처리는 (1) 신계약비를 당기비용(period cost)으로 인식하거나, (2) 자산(deferred acquisition cost)으로 인식하는 방식이 있음.

- (2)의 형태는 지출된 신계약비가 당기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앞으로 들어 올 보험료수익에 대응하여 여러 기간에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deferral and amortization)되며 비용처리 전까지는 이연자산으로 표시되는 것임(<표 Ⅲ-1> 참조).

< 표 III-1 > 신계약비의 회계처리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 당기비용	●	●	●	●	●			
(2) 이연자산	●[1)]	●[1)]	●[1)]			●	●	●

주: 1) 손해보험.

□ 호주

o 생명보험

- 신계약비는 비용으로 처리.
- 다만, 회수될 수 있는 부분은 책임준비금에 반영함.

o 손해보험

- 회계기준 AASB 1023호에서는 신계약비가 측정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미래에 보험료 수입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면 자산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있음.
- 이연신계약비는 효익(benefits)이 예상되는 기간에 걸쳐서 상각.

□ 캐나다

o 생명보험

- 모든 신계약비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당기순이익에 반영함.
- 미래에 예상되는 신계약비는 보험부채의 계산에 반영.

o 손해보험

- 신계약비는 계약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보험료 수익과 대응시킴.
- 이연된 신계약비의 상각되지 않은 잔고는 자산으로 보고함.

□ 프랑스

o 생명보험의 신계약비는 관련 부채의 측정에 포함.

- 질머식준비금(Zillmer reserves)을 적립
- 이연신계약비는 별도로 공시.

o 손해보험의 이연신계약비는 자산으로 계상.

□ 독일

o 신계약비는 발생과 동시에 수익에서 차감.

o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서 되받는 금액으로서 보험료 중 비용으로 포함된 금액은 질머식 조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관련 부채의 측정에 포함.

o 질머식 조정은 보험계약자가 지불하는 총보험료의 0.4%를 한도로 하며, 이는 발생 비용과는 관계없음.

- 다만, 질머식 준비금이 부(-)인 경우(계약 초기) 부(-)의 금액은 자산으로 나타냄.

□ 일본

o 모든 신계약비는 발생과 동시에 비용으로 처리.

- 일부 보험사는 질머식을 채택.

□ 영국

o 신계약비는 신규계약에서 충분한 마진이 예상되는 한 자산으로 인식하여 상각.

- 회사법에서는 특정년도에 발생하였지만, 이후 연도와 관련되는 신계약비는 이연하여 자산으로 계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o 생명보험에 대해서 신계약비의 이연이 허용되고 있음.

- 그러나 보험협회(ABI)가 제시하는 권고기준서(SORP)에서는 두 가지 기준만이 제시되고 있음.

a) 명백한 이연신계약비로서 질머식과 같은 계리방식을 이용하여 전체·부분적으로 계산되어 별도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함.

b) 책임준비금 계산에 할당되는 암묵적 계리방식으로 반영.

o 손해보험의 경우 권고기준서(SORP)는 이연신계약비의 계산이 미경과보험료를 계산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함.

□ 미국

o 보험계약 인수와 비례하는 관련 비용은 자산으로 인식함.

- 자산으로 계상된 신계약비는 인식된 보험료 수익에 비례하여 비용으로 인식.

o 그러나 유니버셜형과 일부 배당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유니버셜형 계약과 특정 배당계약의 신계약비는 해당 계약군의 계약기간에 걸쳐 추정되는 총수익(또는 총마진)의 현재가치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상각.
- 두 유형의 계약 모두 추정 총수익(또는 총마진)은 주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함.
- 배당계약의 경우 경험치나 초기 추정치를 수정하여야 하는 다른 증거가 있을 경우 누적 총상각액을 수정.

다. 이연신계약비의 감액

□ 이연신계약비의 감액이란 계약 체결시에 이미 지출된 신계약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미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자산으로 표시하였으나, 예상수익이 지출보다 작아지는 손실(impairment loss)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반영하는 것임.

o 이연신계약비를 허용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한국의 경우,

- 미국과 한국에서는 보험료결손(premium deficiency)제도를 두고 있는 반면,

- 영국에서는 명문화된 기준은 없으나, 손해보험에서 보험료결손이 포함된 미소멸리스크준비금(provision for unexpired risks)[18]을 적립하고 있음.

< 표 III-2 > 이연신계약비의 감액 기준의 명시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 기준 명시		●					●	●
(2) 기준 없음	●		●	●	●	●		

□ 호주

o 손해보험에서 신계약비는 관련 보험료가 인식되면 상각된다는 전제가 있으나, AASB 1023에서 별도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음.

- 다만, 실질적으로 회사법에서는 자산이 회수금액 이상으로 장부에 계상되는 것을 금하고 있음.

o 생명보험에서 신계약비는 당기비용으로 인식됨.

- 준비금 중 신계약비 부분의 회수가능성은 부채평가가 이루어질 때마다 평가되므로 신계약비를 자산으로 계상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감액기준을 따로 둘 필요도 없음.

□ 캐나다

o 손해보험

- 이연신계약비는 예상되는 미래 보험금을 차감한 미래의 보험료 수익을 기초로 한 회수기준(overall recoverability test)에 따름.

o 생명보험에서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되므로 기준이 필요 없음.

---

18) 미소멸리스크준비금이란 보험사가 보험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부채가 떠맡은 리스크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며, 미지급보험료와 미경과보험료 및 보험료결손을 모두 포괄하는 준비금임. 김해식(2001), p.28., IASC(1999), para. 297.

□ 독일

o 해약환급금(surrender values)이 질머식 준비금을 한도로 함에 따라 신계약비는 질머식 준비금이 양(+)이 되는 시점에서 전액 회수됨.
  - 이 경우 자산계정에서 부(-)로 표시되는 금액은 회수되지 못할 수도 있음.
  - 따라서 회수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이용하면 암묵적인 이연신계약비는 줄어들게 됨.

□ 영국

o 감액손실기준은 회계기준 어디에도 제시되고 있지 않음.
  - 이연신계약비는 미래 마진에서 회수되어야 함.

o 손해보험에서는 미소멸리스크준비금이 적립되고 있음.[19)]

□ 미국

o 보험계약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판매와 서비스, 보험료결손 여부를 결정하는 수익성 측정방식에 따라서 분류되어야 함.

o 손해보험(short-duration contracts)의 경우
  - 예상 보험금원가와 손해사정비, 예상 계약자배당, 아직 자산으로 남아있는 이연신계약비, 관리비용의 합계가 관련 미경과보험료(unearned premium)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보험료결손(premium deficiency)으로 인식함.
  -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이연신계약비를 모두 상각하고, 그래도 남는 결손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준비금(부채)을 추가로 쌓아야 함.

19) 여기서 리스크란 예상 보험금과 사업비가 예상 보험료와 투자수익을 초과하게 되는 리스크임.

o 생명보험(long-duration contracts)의 경우
- 보험료결손은 이연신계약비를 줄이거나 보험료적립금의 증가를 통해서 수익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인식됨.
- 일단 보험료결손이 발생하면 부채의 미래 변동은 개정 기초율에 기초하여야 함.

라. 재보험미수금의 인식

□ 재보험미수금은 보험사가 당면하게 되는 대표적인 신용리스크 발생 항목임.[20)]

o 재보험미수금은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으로 계상될 때 총액(gross basis)으로 표시되는 방식과 관련 부채와 서로 상계하여 순액(net basis; offset to the related liabilities)으로 표시되는 방식이 있음.

o 대다수의 국가가 총액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순액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대차대조표에 별도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음.[21)]

< 표 III-3 > 재보험미수금의 표시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 총액방식	●	●	●		●	●	●	●
(2) 순액방식				●				

20) 따라서 각국의 보험감독당국에서는 이러한 재보험미수금을 자산건전성 등에 반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부실자산비율 및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음. 권준하(2004). 참조.

21) 독일 외에도 스위스, 네델란드, 브라질 등이 순액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IASC(1999).

□ 캐나다

o 생명보험

- 재보험미수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지만, 재보험 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채로 보고하는 금액을 조정
- 보험계약의 미래 현금흐름에서 미래에 재보험사로부터 받거나 재보험사에게 지급할 금액을 차감.

o 손해보험

- 소급재보험에 납부된 보험료는 해당 손해보험의 재보험 출재 부분에 상응하는 부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재보험미수금 (reinsurance receivables)으로 인식.
- 만일 보험료가 부채보다 크다면 재보험 채권을 줄이거나 관련 부채를 늘려야 함.

2. 자산의 회계처리 기준

가. 채무증권(debt securities)

1) 장부상 금액의 표시 기준

□ 채권 등의 장부금액(carrying basis)을 표시하는 방식에는 (1) 공정가치 또는 시장가치(FV or MV)[22], (2) 상각원가(amortized cost), (3) 시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만을 반영하는 저가법(lower of cost or market)의 세 가지가 주된 형태임.

< 표 III-4 > 채무증권의 장부상 금액의 표시기준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 공정가치	●				●[2]	●[1]	●[2]	●[2]
(2) 상각원가		●	●	●	●[3]	●[1]	●[3]	●[3]
(3) 저가법				●				

주: 1. 선택사항.
2. 거래증권(TFS)이나 중도매각가능증권(AFS)의 경우에 적용.
3. 만기보유증권(HTM)의 경우에 적용.

가) 공정가치 또는 시장가치(Fair Value or Market Value)로 표시

□ 호주, 영국(선택), 미국, 일본[23], 한국이 여기에 속함.

o 한국과 미국, 일본의 보험사들은 모두 주식과 채권 등의 유가증

22) 공정가치(fair value)란 자발적 거래의사를 지닌 당사자들(buyer and seller)간에 공정한 조건(arm's length rule)으로 형성되는 가격을 의미하며, 이는 시장의 존재 유무를 불문함. 시장이 존재하여 형성되는 시장가치가 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 가치를 공정시장가치(FMV; fair market value)라고 부름. 일반적으로 시장가치는 공정가치의 요건을 만족함.

23) 2000년 4월부터 미국과 같이 유가증권을 TFS, AFS, HTM으로 구분하여 공정가치나 상각원가법을 적용하는 새로운 회계기준을 시행. PwC(2002).

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들 중 만기보유증권을 제외한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함.

(1) 거래차익을 목적으로 1년 이내에 매각할 거래증권(TFS)의 경우 처분손익은 물론 평가손익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반면,

(2) 보유하는 도중 매각이 가능하지만 장기투자 목적의 중도매각 가능증권(AFS)은 처분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되나, 평가손익은 자본계정에 일단 반영된 후 처분할 때 당기손익에 반영됨.

(3) 한편, 만기까지 보유할 유가증권(HTM)은 평가손익을 계상할 실익이 없으므로 액면가와 취득당시의 할인·할증의 차이만을 고려하는 상각원가로 표시됨.

□ 호주

o 공정가치로 표시된 투자자산의 변동은 당기손익에 반영함.

o AASB 1023호에 의하면, 손해보험의 투자부문은 매기 순시장가치로 보고되어야 하고, 그 변동은 변동이 발생한 기간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함.

- 그러나 손해보험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들에 대해서는 원가법을 적용함.

o 생명보험사는 모든 자산을 매기 순시장가치로 보고해야 하며, 자산변동은 당기 비용이나 수익으로 인식.

나) 상각원가(amortized cost or cost less depreciation)로 표시

□ 채권의 경우 상각원가법을 적용하면 채권의 액면가(face value)와 취득 당시의 할인 또는 할증(discount or premium) 받은 금액만큼의 차이를 만기에 이르는 기간동안 손익으로 인식하여 만기에는 장부상 표시 금액이 본래의 액면가로 나타나게 하는 방식을 의미함.

o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선택), 일본(HTM), 미국(HTM), 한국(HTM) 등이 여기에 속함

□ 캐나다

o 생명보험의 채무증권은 상각원가로 표시.

- 개별증권의 신용도 하락에 따른 감액손실을 반영.

o 손해보험의 채무증권과 대출은 상각원가 기준으로 계상하고, 감액손실을 반영.

- 취득시의 할증 또는 할인은 만기까지의 기간에 걸쳐 안분(allocation)하여 인식.
- 일단 감액손실이 발생하여 이행원가의 감액분이 수익에서 차감된 후에는 이행원가를 감액 이전으로 회복시킬 수 없음.

□ 독일

o 채무증권은 등록채권(registered bonds)을 의미함.

다) 저가법(Lower of cost or some other amount)으로 표시.

□ 저가법이란 자산의 이득(gain)은 인식하지 않고 손실(loss)만 인식하는 보수적 회계처리의 대표적 사례임.

o 따라서 장부상 표시금액은 취득 당시 원가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취득원가보다 낮아진 금액을 새로운 장부금액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독일이 이 유형에 속함.

□ 독일

o 유통채권(bearer securities)에 저가법을 적용.

2) 채무증권 처분손익(realized gains or losses; 실현손익)

□ 채무증권의 처분 또는 평가손익을 표시하는 방식에는 (1) 당기순이익에 포함, (2) 자본계정에 별도 표시, (3) 상각, (4) 인식하지 않는 방식[24]의 네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음.

□ 채무증권의 처분손익은 당기손익에 포함하는 (1)이 일반적 형태임(<표 Ⅲ-5> 참조).

< 표 Ⅲ-5 > 채무증권의 처분손익의 표시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 당기손익	●	●		●	●	●	●	●
(2) 자본계정			●					
(3) 상각방식		●		●				

□ 프랑스

o 금리변동에 따른 채무증권의 실현손익은 손익계산서에서 제거하여 자본계정의 '자본적립금'으로 이전하여 표시.

□ 캐나다

o 생명보험의 경우 처분손익을 잔여기간에 걸쳐서 상각.

- 채무증권과 대출의 실현손익을 이연하여 판매자산의 만기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걸쳐서 상각.

o 손해보험은 당기손익에 포함.

24)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생명보험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됨. IASC(1999).

3) 채무증권 평가손익(unrealized gains or losses; 미실현손익)[25]

□ 채권 등의 평가손익을 표시하는 방식도 (1) 당기손익에 포함, (2) 자본계정에 별도 표시, (3) 상각[26], (4) 인식하지 않는 방식이 있음(<표 Ⅲ-6> 참조).

□ 채무증권의 평가손익(unrealized gain or loss)

o 호주와 영국은 평가손익 모두를 당기손익에 포함하는 반면,

o 캐나다, 프랑스와 독일은 기존 장부상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감액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당기손익에 반영함.

o 미국, 한국 등은 증권형태에 따라 인식 기준이 다름.

< 표 Ⅲ-6 > 채무증권의 평가손익의 표시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 당기손익	●	●	●	●	●[1]	●	●[1]	●[1]
(2) 자본계정					●[2]		●[2]	●[2]
(4) 인식안함		●	●	●	●[3]		●[3]	●[3]

주: 1) 거래증권(TFS).
2) 중도매각가능증권(AFS).
3) 만기보유증권(HTM).

□ 캐나다의 평가손실(unrealized loss)의 인식

o 생명보험의 채무증권 및 대출의 감액손실은 해당기간의 손실로 인식.

o 손해보험의 투자자산 손실은 처분할 때까지는 인식되지 않지만, 감액손실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영함.

---

25) 한국의 경우 평가손익은 자본계정의 임시항목인 자본조정계정 이외에 부채계정의 계약자지분조정에도 계약자몫이 구분 계상되고 있음.

26) 스페인,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이 여기에 속함. IASC(1999).

□ 프랑스

o 신용리스크가 존재할 경우 평가손실을 재무제표에 표시.

□ 독일

o 등록채권은 상각법 이외에 감액손실이 발생할 경우 저가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나.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

1) 장부상 금액의 표시 기준

□ 주식 등의 장부상 금액(carrying basis)의 표시방식으로는 크게 (1) 공정가치 또는 시장가치(FV or MV), (2) 저가법(lower of cost or market), (3)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method)이 있음(<표 Ⅲ-7> 참조).

< 표 Ⅲ-7 > 지분증권의 장부상 금액의 표시기준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공정가치	●				●	●	●	●
(2)저가법		●[1)]	●	●				
(3)이동평균법		●[2)]						

주: 1) 손해보험
2) 생명보험.

□ 캐나다

o 손해보험에서는 저가법, 생명보험에서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함.

o 손해보험사의 보유 주식 등 지분증권은 원가로 계상하고 감액손실은 인식.

- 감액손실은 수익에서 바로 차감하고 이후에 번복하지 않음.

o 생명보험의 주식과 투자부동산은 이동평균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표시.
- 기말 시장가와 장부금액간 차이는 이연.
- 이연금액은 OSFI에서 정해놓은 비율(지분증권 15%, 투자부동산 10%)로 상각.
- 처분손익 역시 동일한 비율로 상각하고, 평가손익의 연간 상각 금액은 장부상 금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고, 순처분손익을 차감한 평가이익의 잔고는 대차대조표에 별도로 계상됨.

2) 지분증권의 처분(실현)손익

□ 주식 등 지분증권의 처분손익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표 Ⅲ-8> 참고).

< 표 Ⅲ-8 > 지분증권의 처분손익 표시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 당기손익	●	●[1)]	●	●	●	●	●	●
(2) 자본계정								
(3) 상각방식		●[2)]						

주: 1) 손해보험
2) 생명보험.

3) 지분증권의 평가(미실현)손익

□ 지분증권의 평가손익은 크게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4)와 반영하는 경우(1, 2, 3)로 나누어 볼 수 있음.

o 평가손익을 반영하는 경우에도 보유목적 등 증권 분류에 따라 인식형태가 다름.

< 표 III-9 > 지분증권의 평가손익의 표시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 당기손익	●		●	●	●[3]	●	●[3]	●[3]
(2) 자본계정					●[4]		●[4]	●[4]
(3) 기타 상각		●[1]						
(4) 인식 안함		●[2]	●	●				

주: 1) 생명보험.
2) 손해보험.
3) 거래증권(TFS).
4) 중도매각가능증권(AFS).

다. 대출(loan)

1) 장부상 금액의 표시 기준

□ 대출의 장부상 금액의 표시 기준은 (1) 공정가치, (2) 상각원가 또는 저가법의 두 가지 형태로 대별될 수 있음(<표 Ⅲ-10> 참조).

o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장부상 금액에 포함할 것이냐의 여부와 더 나아가 이득과 손실을 동일하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o 회수가능성을 반영하여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반영하는 데 그치고 있는 (2)의 형태와 대출채권의 평가이익도 평가손실과 동일하게 인식하는 (1)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표 III-10 > 대출의 장부상 금액의 표시기준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 공정가치	●					●		
(2) 상각원가		●	●	●	●		●	●

o 대손충당금 적립은 대출채권이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에 좌우됨.
- 과거에는 회수불가능 정도를 판단하는데 과거의 손실경험에 주로 의존하는 "backward-looking"방식이었으나, 점차 차입자의 부도 가능성도 고려하는 “forward-looking"방식으로 진전되고 있음.
- 그러나 “forward-looking"방식조차도 신용리스크에만 의존하고 있고, 평가손실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가치(fair value)와는 차이가 있음.[27)]

□ 캐나다

o 약관대출 이외의 대출은 상각원가 기준으로 취득시의 할인, 할증은 만기까지의 기간에 걸쳐 상각함.
- 개인 대출은 감액손실, 즉 더 이상 원리금을 적시에 전액 환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지 못할 때 대출을 삭감.
- 손실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을 삭감함.

o 약관대출은 해약환급금 담보 대출이므로 손익이 발생하지 않음.

2) 대출의 실현(처분)손익

□ 대출의 경우 실현손익은 (1)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경우, (2) 상각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28)]

< 표 Ⅲ-11 > 대출의 처분(실현)손익 표시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 당기손익	●	●[1)]	●	●	●	●	●	●
(2) 상각		●[2)]						

주: 1) 손해보험.
2) 생명보험.

27) ECB(2004), pp.18-20.
28) 인도네시아는 대출채권의 실현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IASC(1999).

3) 대출의 평가(미실현)손익

□ 대출의 평가손익은 (1)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경우와 (2) 인식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29)]

< 표 Ⅲ-12 > 대출의 평가(미실현)손익 표시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 당기손익	●					●		
(4) 인식 안함		●	●	●	●		●	●

라. 투자부동산(Investment real estate)

1) 장부상 금액의 표시 기준

□ 투자부동산의 장부상 금액의 표시 기준은 (1) 공정가치, (2) 상각원가, (3) 저가법, (4) 이동평균법의 네 가지 형태가 있음.

o (2)의 상각원가란 감가상각・손실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가액.

< 표 Ⅲ-13 > 투자부동산의 장부상 금액의 표시기준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공정가치	●					●		
(2)상각원가			●		●		●	●
(3)저가법				●				
(4)이동평균		●[1)]						

주: 1) 생명보험.

29) 네덜란드, 스페인 등은 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남아프리카는 손해보험은 자본계정에서 인식하나, 생명보험은 인식하지 않음. IASC(1999).

2) 투자부동산의 처분(실현) 및 평가(미실현)손익

< 표 Ⅲ-14 > 투자부동산의 처분(실현)손익 표시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 당기손익	●		●	●	●	●	●	●
(2) 상각		●[1)]						

주: 1) 생명보험.

< 표 Ⅲ-15 > 투자부동산의 평가(미실현)손익 표시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 당기손익	●					●		
(2) 상각		●[1)]						
(3) 인식 안함			●	●	●		●	●

주: 1) 생명보험.

3. 분리계정

□ 변액보험 등과 같은 보험계약은 계약의 특성상 전통적인 보험계약과 구분되지만, 이를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데에는 (1) 통합하되 구분계리하는 경우와 (2) 처음부터 일반계정과 분리(separate accounting)하는 경우로 나누어짐.

o 변액보험 등의 보험계약은 일반계약과 달리 일반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지 않으며, 보험계약자는 투자리스크를 부담하고 보험사는 계약관리와 사망리스크 인수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o 이런 유형의 보험계약은 국가에 따라 (1) 일반계정의 재무제표와 별도로 보고되거나, (2) 여전히 다른 일반자산과 함께 보고되는 경우가 있음.

< 표 III-16 > 변액보험 등의 분리계정 적용 여부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 통합보고	●							
(2) 분리보고		●	●	●	●	●	●	●

□ 호주

o 변액보험 등의 자산을 일반 자산과 혼합 운용하지만, 기금별 구분계리를 하고 있음.

□ 캐나다

o 분리계정 계약과 연계된 자산과 부채는 분리 표시

o 일부 생명보험사는 분리계정 자산과 부채를 일반계정에 총계로

보고하고, 일부 생보사는 완전히 분리된 재무제표로 보고하거나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보고.

□ 프랑스 및 영국

o 프랑스는 보험계약자가 투자리스크를 부담할 때의 자산·부채는 일반계정과 분리.

o 영국은 보험급부가 자산 또는 지수와 연계되어 있는 계약의 자산·부채는 일반계정과 분리.

□ 미국

o 분리계정의 투자자산은 시장가치로 보고하되, 투자보장계약은 제외됨.

o 공인회계사회(AICPA)는 비전통계약의 회계처리 및 분리계정에 대한 의견서(SOP)를 제시하여 분리계정 자산과 부채의 보고를 정하고 있음.

4. 보험사의 부채

가. 단기계약(손해보험) 보험료의 인식

□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에게서 거둬들인 보험료는 앞으로 제공할 보장서비스에 대한 선수금이라는 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이를 인식하는 방식에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

o (1) 처음에는 선수금 등의 부채로 인식하였다가 일정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과 (2) 보험료 수령과 동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다시 상응하는 부채를 인식하는 방식이 있음.

o (2)에서 미경과보험료적립금(provisions for unearned premiums)이 보험계약자에게서 거둬들인 보험료에 상응하는 부채계정임.

< 표 III-17 > 단기계약의 보험료 인식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 부채인식	●	●		●	●		●	
(2) 수익인식			●			●		●

□ 호주

o AASB 1023호에서는 보험사가 리스크에 노출되는 때에 리스크 발생패턴이나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증권 기간에 걸쳐서 인식하도록 함.

- 대다수의 경우 보험료를 이연보험료라는 부채로 인식하고 이를 계약기간에 걸쳐서 상각하면서 수익으로 전환하여 인식함.

□ 캐나다

o 처음에는 부채(이연보험료)로 인식하였다가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하면서 수익으로 인식.

- 생명보험사는 단기계약의 보험료를 납입응당일(when they become due)에 수익으로 인식함.

□ 독일 및 일본

o 보험료는 이연보험료로 계상하고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하면서 수익으로 인식.

□ 프랑스 및 한국

o 수령과 동시에 수익으로 인식하지만, 미경과분은 이연하여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미국

o 보험료는 보장기간에 비례하여 수익으로 인식.

나. 단기계약(손해보험) 보험금

□ 단기계약의 보험금은 (1) 추정보험금 원가를 기초로 인플레이션 효과와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와 (2) 다른 방식에 기초하는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표 III-18 > 단기계약의 보험금 인식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 추정원가	●	●	●	●[1)]		●		
(2) 기타 방식					●		●	●

주: 1) 인플레이션 효과는 배제

□ 캐나다

o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의 부채는 추정된 최종 명목원가로 측정됨.
  - 계약 또는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지급금액을 포함하여, 인플레이션과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비한 준비금이 포함되며, 이는 보험담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o 일부 손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부채에 역편차준비금(PfAD)[30]도 포함.

□ 프랑스

o 미래 추정 관리비용도 포함

□ 독일

o 인플레이션 효과는 배제

□ 일본 및 한국

o IBNR은 감독규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적립

□ 미국

o 보험부채에는 보고된 손해액 이외에 발생했지만 아직 보고되지 않은 추정손해액(IBNR claims)도 포함.

o 잔존물 및 구상은 미지급보험금 부채에서 차감.

다. 단기계약(손해보험) 보험금의 현가 계산

□ 단기계약의 보험금은 (1) 할인율이 적용되는 형태와 (2) 적용되지 않는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30) 위험기초율에 대한 안전할증을 의미함. 김해식(2001), pp.49-51 참조.

< 표 III-19 > 단기계약 보험금의 현재가치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 현재가치	●	●[1)]				●[2)]	●[2)]	
(2) 할인 안함		●[1)]	●	●	●	●	●	●

주: 1) 생명보험은 할인, 손해보험은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2)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

□ 호주

o AASB 1023호에 의하면, 할인율은 보험사가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수익률임.

- 시장에서 결정된 위험가중수익률.

□ 캐나다

o 생명보험은 할인하여 보고.

- 부채를 뒷받침하는 자산의 장부상 수익률로 할인.

□ 독일

o 연금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비한 준비금은 인식된 계리방식에 따라 계산.

- 할인율은 재무부장관 및 감독청이 최대 한도를 설정.
- 계리적 이자율은 보험금지급통화표시 정부채권의 현행 이자율로서 60% 미만.

□ 영국

o 암묵적인 할인을 금지하고 있음.

o 정해진 공시와 함께 다음의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할인 허용.

- ① 회계기간과 종료일간의 기간이 4년 이상일 경우,
- ② 신의성실의 신중한 기준에 따를 때,

- ③ 총보험금원가를 계산할 때 모든 요소 반영,
- ④ 보험금 종료패턴을 예상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모형과 충분한 데이터를 사용할 때.

o 할인은 특정 장기보험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이지 않음.

o 할인율은 경영진이 정하지만 법적 제약을 받음.

□ 미국

o 보험사고 종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종목을 제외하고는(long tail line) 일반적이지 않음.

o SEC는 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

- (1) 지급패턴과 최종 보험금원가가 고정되어 개별 기준에서 될 수 있고,
- (2) 적용되는 할인율은 보험금 종결 시에 적용 가능한 환경과 사실들에 기초하여 합리적이어야 함.

라. 단기계약(손해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 손해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은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평준화하는 장치라는 비난을 받아왔으며, 그 결과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을 삭제한 바 있음[31)]

o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 (1) 그 적립을 강제하거나, (2) 적립을 허용하는 국가도 있지만, (3) 이익평준화 장치라 하여 금지하는 국가도 있음(<표 Ⅲ-20> 참조).

31) [부록3] 참조. 그동안 보험권에서는 최소한 대재해준비금(catastrophe reserves)은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 왔음. 김해식(2001), pp.31-32., IASB(2001), priciple 2.2., 4.10. 참조.

< 표 III-20 > 손해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인식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 의무적립				●	●			●
(2) 자율적립			●			●		
(3) 적립금지	●	●					●	

□ 캐나다

o 비상위험준비금이 존재하지 않음.

- 다만 역편차준비금(PfAD)을 넓은 의미에서 비상위험준비금으로 볼 수 있음.

□ 프랑스

o 손해보험, 신용보험, 단체건강보험에 대해 적립.

o 손해보험.

- 일정금액(lump-sum basis) 기준으로 매년 할당하나, 보험영업이익(underwriting income)의 75%를 초과할 수 없음.
- 총 준비금은 원수보험료의 다음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① 농작물보험(hail insurance) 200%
  ② 자연재난관련 리스크(법률상 강제보험) 300%
  ③ 자연현상관련 리스크 300%
  ④ 핵 리스크 500%
  ⑤ 오염리스크(배상책임) 500%
- 보험영업손실의 경우 손실금액은 평형준비금에서 환입하여 보전할 수 있음.
- 평형준비금에서 차감할 때는 선입선출을 적용하여 차감.
- 10년이 경과하여도 환입되지 못한 경우 11년차에 과세대상소득에 합산.

o 신용보험.
- 신용대출보장, 거래채권 및 단기공급자대출 관련 신용보험에 한정(다만, 회사 전체 보유보험료 중 신용보험의 보험료가 4% 미만이거나 연간보험료가 250만유로인 경우는 제외).
-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수출신용은 제외.
- 총 적립 한도는 보유보험료의 4% 이내 또는 250만 유로 미만이며, 연간 보험영업이익의 75%를 적립하며 5개년 보유보험료의 134%를 하회할 수 없음.
- 평형준비금의 활용은 손해보험 비상위험준비금과 동일.

o 생명 및 단체건강보험의 평형준비금은 영업변동에 대비하려는 목적임.

□ 독일

o 경험율이 1994년 11월 법무부가 제정한 보험사 회계규정에 반영되면서 상법 및 세법에도 반영됨.
- 규정은 모든 손해보험사와 재보험사에 적용.
- 감독목적으로 별도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다음의 모든 보험종목에 적용.
  ① 3개년 보유보험료가 DM25만을 초과
  ② 손해율의 표준편차가 최소 5%p
  ③ 한 해의 합산비율이 100%를 초과

o 평형준비금의 최대 금액은 연간 순경과보험료에 손해율의 표준편차를 곱한 값의 450%(농작물, 신용,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600%).
- 최대금액은 비상위험에 대비한 부가보험료만큼 줄일 수 있음.
- 평균 이하의 손해가 발생하면 상응하는 금액을 평형준비금으로 전입하고, 평균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상응하는 금액을 평형준비금에서 환입.
- 평균 손해의 계산은 최대 15년의 기간을 상정(농작물, 신용, 보증은 30년).

o 준비금의 최대 금액의 계산은 3.5% 할인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년 최대 준비금의 3.5%씩 증가하며, 이는 평균 손해 이상, 이하에 구애받지 않음.

o 핵시설설치보험, 제약제조물보험에서는 거대리스크준비금이 강제.

- 거대리스크준비금(large risk reserve)의 기능은 평형준비금의 기능과 유사.
- 평형준비금은 손해가 수 년동안 변동하고 기금의 적립과 환입을 통해 변동을 평형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무작위로 일어나는 정상적인 손해변동에 관련된 것이지만, 거대리스크준비금은 아주 예외적인 손해로 인한 특정 년도의 변동에 관련된 것임.
- 따라서 거대리스크준비금은 평형화준비금과 유사한 추가적인 준비금으로서 거대리스크에 내재하는 변동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일반적인 평형화준비금에 추가한 준비금임.

□ 일본[32)]

o 이상위험준비금을 강제.

- 대재해준비금은 법으로 정하고 있고, GAAP에서는 책임준비금으로 취급.
- 책임준비금에는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대재해준비금, 적립형보험의 보험료적립금 등으로 구성됨.
- 보험업법과 규정에서는 정확한 계산규정을 제시.

o 적립율과 환입율, 적립한도는 종목별로 정함.

- 적립율은 보유보험료 기준.
  ① 해상(선박, 항공)보험 3%
  ② 화재보험 3.8% (통상의 1.5배 할증적립 허용), 적하보험, 운송, 건설공사, 동산종합보험 2%
  ③ 자동차, 상해보험, 근재, 기계, 비용보험 등 3.2%
  ④ 간병보험3.2%

32) 이기형(2004).

⑤ 보증보험 3.2%

⑥ 핵시설(원자력보험) 50%

⑦ 생보수재 24%

o 특정년도의 원수보험료 대 지급보험금 비율(Written to Paid (W/P) loss ratio)이 특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초과손해를 대재해로 규정.

- 적립한도(보유보험료 기준) / 환입(W/P Loss Ratio 넘는 손해)

① 해상보험 250% / 80% 초과 손해

② 화재보험, 적하보험 160% / 50% 초과 손해

③ 자동차, 상해보험 등 160% / 50% 초과 손해

④ 개호보험 160% / 50% 초과 손해

⑤ 보증보험 160% / 50% 초과 손해

⑥ 핵시설: 무제한 / 모든 손해

⑦ 생보수재 24% / 100%

□ 영국

o 연간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적립.

- 손해보험과 신용보험에 대해 적립토록 FSMA에 규정됨.

마. 소급재보험특약(손실포트폴리오 이전)의 손익 인식

< 표 III-21 > 소급재보험특약의 손익 인식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 당기손익		●[1)]			●	●	●[1)]	●
(2) 인식 안함	●						●	●
(3) 기준 없음		●	●	●				

주: 1) 이연상각

□ 호주

o AASB 1023호는 손해책임이 이전 보험사에게 남아 있는 한 계약(포트폴리오)이전을 재보험으로 간주함.

□ 캐나다

o 해당 기준이 없음.

o 과거 생명보험사는 소급재보험을 맺으면 손익을 인식했으나, 실무에서는 이연하여 상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o 손해보험의 경우 출재보험사는 상황에 따라 소급재보험 계약시에 손익을 인식.

- 출재부분의 부채가 출재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순재보험채권에 발생하는 이득을 이연하여 모든 금액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걸쳐 상각.
- 이득은 출재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더 이상 책임이 없는 재보험계약시에 인식.
- 재보험료가 출재부분 부채 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

o 재보험사는 원수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므로 경과보험료와 부채를 적절하게 측정하고 인식하면 득실의 이연은 없음.

□ 프랑스와 독일

o 해당 규정은 없음. 다만, 출재보험사는 손익을 즉시 인식.

□ 일본 및 영국

o 소급재보험은 손익을 당기에 인식하게 함.

□ 미국

o 재보험계약은 부채의 이전이 없이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o 요건을 만족하는 재보험 이득은 이연하여 추정기간에 걸쳐 상각.

바. 재보험 회계처리

□ 재보험의 출재보험료와 구상은 보험료수익과 손해액의 (1) 차감계정(contra account)으로 표시될 수도 있고, (2) 비용과 수익항목으로 표시될 수도 있음.

< 표 III-22 > 재보험 회계처리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 차감계정		●	●	●[1)]	●	●	●	
(2) 수익/비용	●							●

주: 1) 별도 공시.

사. 장기계약(생명보험)의 보험료 인식

□ 생명보험 등 장기계약에서 보험료는 (1) 수익으로 인식되거나, (2) 부채(책임준비금의 증가)로 인식되는 경우로 나누어짐.

o (2)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부과된 비용, 마진 획득, 기타 요소에 따라 수익이 인식됨.

< 표 III-23 > 장기계약의 보험료 인식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 수익	●[1)]	●	●	●	●	●	●	●
(2) 책임준비금	●[2)]						●[2)]	

주: 1) 보험료 중 리스크 또는 수수료 부분.
2) 보험료 중 저축 또는 투자 부분 또는 투자계약 보험료.

□ 호주

o AASB 1038호에 따라 보험료 측정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
- 저축·투자부분의 보험료는 책임준비금의 증가로 인식하고,
- 리스크 또는 수수료 부분은 수익으로 인식.

o 보험료의 측정을 신뢰할 수 없을 경우 모든 보험료를 수익으로 인식.

□ 캐나다

o 생명보험료는 납입응당일에 수익으로 인식.

□ 미국

o 납입응당일에 수익으로 인식.
- 변액보험은 평가된 보험료를 수익으로 인식.
- 지급제한계약에서 보험료는 급부제공기간에 걸쳐 인식.

o 투자계약의 보험료는 부채로 인식.

Ⅳ. 보험회계모형

1. 보험계약의 성격

가.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회계모형

□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보험은 모두 생명보험으로 간주되고, 손해보험사가 판매한 보험은 모두 손해보험으로 간주되고 있음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나 다소간 차이가 있음.

□ 호주

o AASB 1038호에 의하여 모든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보험은 생명보험으로 간주되고 AASB 1023호에 의하여 모든 손해보험사가 판매한 보험은 손해보험으로 간주되고 있음.

□ 캐나다

o 증권보험료방식(PPM)을 동일하게 적용

- 그러나 부채측정에는 PPM 내에서도 계약에 따라 다른 계리방식이 적용됨.

나. 보험리스크가 거의 없는 보험계약의 회계처리기준

□ 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많은 국가들이 리스크 이전 정도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으로 간주하고 보험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o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리스크이전(risk transfer)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계약에 예치금회계(deposit accounting)와 같은 일반 금융회계를 적용하고 있음.[33)]

< 표 Ⅳ-1 > 보험리스크가 거의 없는 보험계약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 보험계약	●	●	●	●	●	●	●	●
(2) 금융계약	●[1)]						●[1)]	

주: 1) 보험부채 산출시 다소 차이가 있음.

□ 호주

o 실무상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회계처리를 할 것으로 기대.

o 그러나 보험부채를 결정할 때 사용방법에 대해서 유연성이 있음.

- 리스크부분을 가지는 복잡한 상품의 부채는 전진법을 사용.
- 단순한 상품으로 투자부분이 주력인 경우는 소급법을 이용하여 산출하나, 결과는 전진법과 동일.

□ 미국

o 리스크전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은 예치금회계(deposit accounting)를 적용.

- 예치금회계에 대해서는 기준해석(SOP) 98-7호.
-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는 계약은 예치금회계를 적용하도록 함.
  (1) 중요한 타이밍리스크만을 전가
  (2) 중요한 언더라이팅 리스크만을 전가
  (3) 타이밍이나 언더라이팅 리스크 어느 것도 전가하지 않음
  (4) 불확정 리스크 보유(SOP 92-5호)

33) 네덜란드도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국가임. IASC(1999).

2. 회계모형의 측정방식

가. 보험회계의 현금흐름 측정[34)]

□ 보험계약의 부채, 관련 이연신계약비의 상각 결정에 포함되는 변수들은 다음과 같음.

o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을 반영하는 변수들.

1.1) 보험료(premiums)

1.2) 해약 공제금(surrender charges)

1.3) 사망률 및 사업비(mortality and administrative charges)

1.4) 사망보험금(death benefits)

1.5) 해약환급금(payment on policy surrender)

1.6) 수수료(commissions)

1.7) 계약관련 기타 직접비용

1.8) 다른 비용의 비례 분분

1.9) 정기적인 계약자배당

1.10) 만기 배당

o 추가적인 법률상 지급여력.

□ 보험계약의 현금흐름과 추가적인 법률상 지급여력의 변수들은 보험회계에서 국가별로 4가지 형태로 나타남(<표 Ⅳ-2> 참조).

o (1) 포함되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음.

o (2) 최선의 추정(best estimates) 기준으로 반영.

o (3) 역편차준비금(PfAD)[35)]으로 반영.

o (4) 사전에 정한 데이터 또는 가정들을 기초로 하여 반영.

---

34) 미국의 경우는 보험회계정보가 3가지 기준으로 나뉘어 제공되고 있음; SFAS 60(전통형 상품), SFAS 97(유니버셜형 상품), SFAS 120(배당상품).

35) 안전할증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개념임. 김해식(2001), p.50.

< 표 Ⅳ-2 > 현금흐름 측정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1.보험료변수	2	2	4	4	4	2,3	1[2],2[3],3[1]	4
1.2.해약패널티	2	2	4	1	1	1,2,3	2[2]	1
1.3.관리비	2	2	2	1	3	2,3	2[2]	1
1.4.사망보험금	2	3	4	4	4	2,3	2[2),3)],3[1]	4
1.5.해약환급금	2	3	4	4	1	1,2,3	2[3],3[1]	1
1.6.수수료	2	2	2	1	1	2,3	2[2),3)],3[1]	4
1.7.기타비용	2	3	2	1	2	2,3	2[2),3)],3[1]	4
1.8.비용배분	1	2	2	1	1	2,3	2[2),3)],3[1]	4
1.9.계약자배당	2	2	4	4	1	1,2,3	1[2],2[3],3[1]	1
1.10.만기배당	2	2	4	4	1	1,2,3	1[2],2[3],3[1]	1
1.11.지급여력	1	1	1	4	-	1,2	-	1

주: 1) SFAS 60 전통형 상품.
2) SFAS 97 투자형 상품.
3) SFAS 120 배당형 상품.

1) 보험료 변수

o (1) USA(SFAS 97)

o (2)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SFAS 120)

o (3) 영국(내재가치), 미국(SFAS 60).

o (4) 프랑스, 독일, 일본[36], 한국.

□ 캐나다

o 증권보험료(PPM)방식에서는 상각할 이연신계약비가 없음.

o 보험료, 해약환급에 따른 추징, 사망보장・사업비용 부과의 추정 현금에 대해 적용할 역편차준비금은 없지만, 역편차에 대비한 마진은 사망・만기 현금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의 기초율에 적용되고 있음.

36) 일본의 경우 금융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방법들도 사용할 수 있음.

2) 해약공제금(surrender penalty)

o (1) 독일, 일본, 한국, 영국
o (2) 호주, 캐나다, 영국(내재가치), 미국(SFAS 97)
o (3) 영국(내재가치)
o (4) 프랑스

□ 캐나다

o 보험료, 해약환급에 따른 추징, 사망보장·사업비용 부과의 추정 현금에 대해 적용할 역편차준비금은 없지만, 역편차에 대비한 마진은 사망 및 만기 현금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의 기초율에 적용되고 있음.
o 현존계약의 미래 지출에 관련하여 적절한 준비금이 마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인플레이션 예상 등 추세를 반영하며, 기타 간접비용의 비례 부분도 포함.

□ 미국

o 준비금이 해약공제금으로 인하여 줄어들지는 않음.
o 해약공제금은 실현될 때에 수익으로 인식함.

3) 사망률 및 관리비

o (1) 독일, 한국
o (2)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내재가치, 선택), 미국(SFAS 97)
o (3) 일본, 영국(내재가치, 선택)

4) 사망보험금

o (2) 호주, 영국(내재가치, 선택), 미국(SFAS 97; SFAS 120)

o (3) 캐나다, 영국(내재가치, 선택), 미국(SFAS 60)

o (4) 프랑스, 독일, 일본[37], 한국

5) 해약환급금

o (1) 일본, 한국, 영국.

o (2) 호주, 영국(내재가치, 선택), 미국(SFAS 120)

o (3) 캐나다, 영국(내재가치, 선택), 미국(SFAS 60)

o (4) 프랑스, 독일.

6) 수수료

o (1) 독일, 일본[38]

o (2)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내재가치, 선택), 미국(SFAS 97, 120)

o (3) 영국(내재가치, 선택), 미국(SFAS 60)

o (4) 한국

7) 보유계약의 기타 비용

o (1) 독일.

o (2) 호주, 프랑스, 일본, 영국(내재가치, 선택), 미국(SFAS 97, 120)

o (3) 캐나다, 영국(내재가치, 선택), 미국(SFAS 60)

o (4) 한국.

□ 캐나다

o 영업보험료방식(PPM)에서 보유계약의 책임준비금 계산에 들어가는 비용에는 보험금, 계약자배당금, 실적환급(배당), 증권관련 비

37) 일본의 경우 금융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방법들도 사용할 수 있음.
38) 일본의 일부 보험사는 질머식을 사용.

용과 직접세(보험료세)가 포함되며, 법인세와 광고비 등의 간접비는 배제됨.

8) 기타 비용의 비례 배분

o (1) 캐나다, 독일, 일본
o (2) 호주, 프랑스, 영국(선택), 미국(SFAS 97, 120)
o (3) 영국(선택), 미국(SFAS 60)
o (4) 한국

9) 정기적인 계약자배당

o (1) 한국, 일본, 영국[39], 미국(SFAS 97)
o (2) 호주, 캐나다, 영국(선택), 미국(SFAS 120)
o (3) 영국(선택), 미국(SFAS 60이 적용가능하다면)
o (4) 프랑스, 독일

10) 만기 배당

o (1) 일본, 한국, 영국, 미국(SFAS 97)
o (2) 호주, 캐나다, 영국(선택), 미국(SFAS 120)
o (3) 영국(선택), 미국(SFAS 60, 적용할 수 있다면)
o (4) 프랑스, 독일

11) 추가적인 법정 지급여력

o (1)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o (2) 영국

39) 영국의 경우 미래 배당은 부채에 포함하지 않음. IASC(1999).

o (4) 일본

□ 영국

o 추가적인 준비금은 법정 지급여력기준에 포함됨.

- 예로서, 투자수지 악화에 대비한 준비금, 신계약비의 마감 등.
- 이들 비용은 법에서 정한 수정재무제표의 준비금임.

나. 부채의 계산

□ 부채의 계산은 (1) 미래 현금흐름에 근거한 미래법(prospective method)으로 부채 계산하는 방식, (2) 발생금액에 근거한 소급법(retrospective method)으로 계산하는 방식, 마지막으로 (3) 공정가치를 측정할 목적으로 계산되는 방식이 있음.

< 표 Ⅳ-3 > 보험부채의 계산방식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 전진법	●	●	●	●	●	●	●[1),2)]	●
(2) 소급법	●		●[4)]		●[5)]		●[3)]	●
(3) 공정가치						●[6)]		

주: 1) SFAS 60 전통형 상품.
2) SFAS 120 배당형 상품.
3) SFAS 97 투자형 상품.
4) 프랑스의 투자형 계약.
5) 일본의 단체연금.
6) 영국의 내재가치 적용 계약.

□ 캐나다

o 증권보험료방식(PPM)은 보고부채금액이 공정가치에 근사해짐.

o PPM 방식이 원래 공정가치 측정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음.[40)]

40) 이에 따라 PPM방식에서 결정된 부채금액이 반드시 공정가치인가 여부는 계속 논쟁거리임.

다. 이익의 발생원천

□ 보험계약의 이익 발생의 원천은 크게 (1) 보험료 마진, (2) 역편차준비금의 해소, (3) 이자율 차이, (4) 사망률에 대한 안전할증과 해지율 및 사업비, (5) 보유계약의 미래이익 가치의 변동으로 분류할 수 있음.

o 각 국가별로 명시적으로 (1)~(5)를 파악할 수 있느냐는 다양하게 나타남.

< 표 Ⅳ-4 > 이익의 발생원천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 보험료마진	●					●	●[1)]	
(2) PfAD해소	●					●	●[1)]	
(3) 이자율차		●	●	●	●	●	●[2),3)]	●
(4) 사차,비차등		●	●	●	●	●	●[2),3)]	●
(5) 계약가치변동						●[4)]		

주: 1) SFAS 60 전통형 상품.
2) SFAS 97 투자형 상품.
3) SFAS 120 배당형 상품.
4) 영국의 내재가치 적용 계약.

□ 캐나다의 경우 (1)보험료 마진과 관련하여

o 증권보험료방식(PPM)에서는 들어올 보험료와 관련 계리적 부채의 감소분을 더한 값이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과 부채의 증가분을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이익이 결정됨.

o 이익은 계약관련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함수로서 나타나며, 여기에는 이전 추정치 대비 실제 현금흐름의 시기 및 금액과의 차이와 현금흐름에 대한 현재 및 과거 추정치들간의 차이가 포함됨.

라. 할인율의 근거

□ 할인율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이자율에는 크게 (1) 책임준비금에 상응하는 투자자산의 기대수익률, (2) (1)의 수정치, (3) 보험계약자 잔고 또는 배당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율, (4) 감독당국의 제시 이자율, (5) 리스크조정 이자율이 있음.

< 표 Ⅳ-5 > 할인율의 근거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 자산기대수익률	●	●				●	●[1),3)]	
(2) (1)의 수정치						●		
(3) 기금이자율		●					●[2)]	
(4) 감독당국이자율			●	●	●		●[2),3)]	●
(5) 위험조정이자율						●[4)]		

주: 1) SFAS 60 전통형 상품.
2) SFAS 97 투자형 상품.
3) SFAS 120 배당형 상품.
4) 내재가치 적용 계약 ; (1)과 (5)중 선택

□ 캐나다

o (1)의 경우 예상 부도, 투자비용 및 투자역편차에 대해 적절한 준비금 적립.
- 이익률은 반드시 시장관련 이율을 이용한 리스크조정율.

o (3)의 경우 보험계약자 잔고 또는 배당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율이 배당규모비율에 근거하고 있을 때에만 해당 이자율을 책임준비금 할인에 사용.

□ 영국

o (2)의 경우 자산수익률의 97.5%를 초과하는 이율의 채택 금지.
- 지분증권(주식)의 경우 미래 자산가격의 상승은 반영하지 않음.

- 듀레이션이 3년 이상인 투자자산의 수익률은 ‘6% + 0.25*(6%)’을 초과하지 못함.

o (5)의 경우 리스크조정할인율 계산에대한 일치된 기준은 없음.

마. 계리기초율의 변동 효과

□ 계리기초율의 변동에 대해서는 (1)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2) 이연하여 상각하는 경우와 (3) 손실만 인식하는 경우, 또는 (4) 아예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표 Ⅳ-6 > 기초율 변동의 인식 여부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 당기손익		●	●	●	●	●	●[1),2)]	
(2) 이연상각	●		●[3)]					
(4) 손실만 인식							●[4)]	●

주: 1) SFAS 97 투자형 계약.
2) SFAS 120 배당형 계약.
3) 인가 받은 경우에는 이연상각 가능.
4) SFAS 60 전통형 계약.

□ 호주와 프랑스(인가받을 경우)가 이연상각방식에 해당.

o 호주

- 미래로 이연된 마진(margins carried forward)은 '0'이 될 때까지 줄어들고, 부(-)의 값이 되면 손실로 즉시 인식.

바. 실적손익의 효과

□ 실적손익은 (1) 당기손익에 반영하거나 (2) 이연하여 상각하는 방식으로 대별됨

o 영국(내재가치)의 경우 일부 사례에서는 투자수익의 변동을 5년에 걸쳐서 이연한 후 상각.

< 표 Ⅳ-7 > 실적손익의 효과

구 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1) 당기손익	●	●	●	●	●	●	●	●
(2) 이연상각						●[1)]		

주: 1) 내재가치 적용 계약.

Ⅴ. 국제기준과 각국별 비교의 시사점

1. 국제기준의 흐름

□ 2004년 3월 공표된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재무보고기준 제4호(IFRS 4)는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

o 다만, 기존의 일반금융회계기준 제39호(IAS 39)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IFRS 4호를 적용하지 않음.

o 따라서 보험사는 자산과 일반부채에 대해서는 일반금융회계기준을, 보험부채에 대해서는 IFRS 4를 적용 받게 되는 것임.

o 현재 국제기준은 보험회계 제정과 함께 IAS 39의 개정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임.

□ 국제회계기준의 흐름은 “공정가치(fair value)”를 핵심으로 모든 금융회계기준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음.

o 따라서 보험사 자산측면에서는 1980년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시기를 거치면서 공정가치회계의 기초를 마련한 미국의 회계기준(US GAAP)이 기본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제기준도 공정가치를 중심으로 재정비될 것으로 판단됨.

o 한편, 보험사 부채측면에서 공정가치 적용에 대한 당위성이 제기되면서 국제기준에서도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모형이 제시됨.

-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은 물론 부채도 공정가치로 평가하므로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바로 알 수 있어 현행 회계관행처럼 수익과 비용을 이연하는 조치가 필요 없음.
- 그러나 국제기준이 제시하는 모형은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험계약의 장기적 안정성과 배치되는 경향이 있음.

o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이른바 영국계의 회계관행은 공정가치회계에 가장 근접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반면,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회계관행에서는 보험부채에 대하여 공정가치와는 거리가 먼 원가회계를 적용하고 있음.

o 금번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재무보고기준 제4호(IFRS 4)는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는 언급하지 않은 임시기준으로 공표되었음.

□ 2005년 보험회계에 대한 제2단계 국제기준 작업(phase Ⅱ) 결과에 따라서 보험부채의 공정가치회계 적용 여부가 확정되는 IFRS 4의 최종 기준이 확정될 것임.

o 현재로서는 '공정가치 또는 잠정적 기업고유가치(fair value or entity-specific value)'라는 대안이 전면적으로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o 향후 2년간 보험회계의 국제기준을 둘러싼 논의는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그 방법론의 적합성, 그리고 실무적 적용을 제고하는 데에 모아질 것으로 예상됨.

2. 국내 보험회계에 대한 시사점과 분석의 한계

□ 보험회계의 자산 측면에서 미국의 공정가치회계가 국제기준에서도 광범위하게 지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o 국내 보험회계는 1998년 이전에는 프랑스, 독일 등 대륙 중심의 회계관행과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는 미국과 영국 등의 회계관행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음.

o 현재 미, 영의 회계관행은 국제기준이 추구하는 공정가치 중심의 자산 인식·측정 기조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

□ 그러나 보험부채에 있어서는 국제기준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

o 미국을 모범으로 삼고 있는 국내 보험회계는 보험부채에 대해서 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국제기준은 부채에 대해서도 공정가치회계를 제안하고 있어 차이가 있음.

o 이러한 차이는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 4가 아직 최종적인 기준에 이르지 못한 이유이기도 함.

- 현재 공정가치 회계모형에 근접하고 있는 국가들은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국계 국가들임.
- 공정가치의 논리적 우수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나, 실무상 적용의 어려움과 재무상태 및 성과의 변동이 매우 심하다는 점에서 반론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최종기준이 2005년 이후로 사실상 연기된 상태임.

o 그러나 현재 국제보험회계기준은 국제금융회계기준의 틀 안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공정가치를 중심으로 한 통합 금융회계기준의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o 따라서 국내에서도 보험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연구와 실무 적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제도들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이 보고서의 분석은 보험회계에 대한 1999년 국가별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비교대상 국가들에 대해서는 2002년 자료 등으로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자료 갱신에는 한계가 있었음.

- o 따라서 특정 비교 항목에서는 본 보고서와 다른 사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연구자가 분류한 항목별 비교와 국가별 분류에 있어서도 다소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음.
- o 또한 국제기준을 염두에 둔 비교분석이므로 회계의 필수적인 항목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비교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참고 문헌

권준하, 「해외재보험계약의 신용리스크 관리에 대하여」, 『위험과 보험』, 2004년 봄호, 코리안리, 2004.

김해식,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연구보고서 2001-11,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1.12.

생명보험본부,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향후 과제』, CEO Report CR 2004-03, 보험개발원, 2004.2.

이기형, 「비상위험준비금 적립방법에 대한 연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내부자료, 2004.4.

European Central Bank (ECB), "Fair Value Accounting and Financial Stability", Occasional Paper Series No. 13, April 2004. (http://www.ecb.int)

Fédération des Experts Comptables Européens (FEE), "Accounting Standard Setting in Europe", Dec., 2000.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Draft Statement of Principles (DSOP): Insurance Contracts", 2001. (www.iasb.org)

_____, "Press Release : IASB issues standard on insurance contracts", 31 March, 2004.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IASC), 『Issues Paper on Insurance Contracts』, Vol. 2., Appendix B, 1999.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 "IAIS comments on Exposure Draft ED 5 Insurance Contracts", IASB CL 112. (www.iasb.org).

PriceWaterhouseCoopers (PwC), "International Comparison of Insurance Taxation", Summer, 2002.

[부록 1]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추진 경과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재무보고기준 4호(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4. Insurance Contracts)를 2004년 3월에 공표함.

o IASC가 1999년 '보험회계 현안보고서'를 통해 국제기준의 기본 골격을 제시한 이래, IASB가 2002년 '보험계약에 대한 기준서초안(DSOP)'을 발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o 이후 IASB는 2003년 공개초안(ED 5)을 발표하고, 최근 국제보험회계기준인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재무보고기준 제4호'를 공표함.

□ 주목할 것은 국제기준의 제정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2005년 제정을 목표로 했던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 추진된 것임(<별표1-1> 참조).

o 이는 다양한 보험회계관행으로 인해 국제기준 초안에 대한 전세계 보험산업의 반발과 국가별 이의제기가 많았기 때문임.

o IASB는 보험회계기준(안)에 대한 많은 반대와 이견을 정리·조정해야 하는 여건을 고려해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기준제정 작업을 두 단계로 분리하여 추진해왔음.

< 별표 1-1 > 국제보험회계기준 추진 현황

구 분	1단계(phase-Ⅰ)[1]	2단계(phase-Ⅱ)
기준서	2004년 3월 IFRS 4호[2]	2005년 초안 공표예정
주요 내용	- 보험계약의 정의 - 공시 사항 강화 - 부채의 인식·측정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 부채 인식·측정 기준의 전면적인 개편

주: 1) 2002년 5월 보험프로젝트를 두 단계로 분리하여 추진.
2) IFRS 4의 효력개시일은 2005년 1월 1일임.

o 유럽연합의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점인 2005년에 맞춰 마찰이 큰 이슈를 제외한 분야를 대상으로 국제적인 단일 재무보고기준(IFRS)을 우선 마련함(제1단계; phase Ⅰ).

- 금번 IFRS 4는 제1단계 작업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정, 공표된 임시기준임.

o 많은 이견이 제시되어 왔던 보험부채의 인식과 측정 부분을 보완한 후 2005년 중에 초안을 마련하고, 최종의견을 수렴하여 제1단계에서 정해진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4)을 개정한다는 계획(제2단계; phase Ⅱ)이 제시되고 있음.

[부록 2]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의 의견서[41)]

□ 이 의견서는 2003년 7월에 IASB가 제시한 보험회계기준의 초안(IFRS 초안; ED 제5호) 및 그 시행지침, 기준 설정의 근거에 대하여 국제보험감독자기구(ISIA)가 제시한 의견들을 담은 것임.

o 이번 IAIS의 의견은 IAIS 회원국들간에 일반적 공감대를 형성한 영역으로 제한하며, 초안의 모든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을 것임.

o 따라서 일부 IAIS 회원국들은 당사국과 관련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제출할 것임.

가. 주요 의견

□ 임시기준(interim standard)

o IFRS 초안은 단기의 임시적 해결책으로서만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이며, 제2단계(phase Ⅱ) 안이 실무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도입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금번 IFRS 초안에 따라 기준서가 공표되더라도 우리가 현재의 잠정(안)에 동의한 것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음.
-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o IFRS 초안으로는 비교가능하고 일관된 회계정책을 이끌어 낼 수 없음.

- 더욱이 IFRS 초안에 담겨진 옵션모형은 개도국들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에서는 현실적 적용에 큰 어려움이 있음.

---

41) IFRS 4호 제정을 위해 IASB는 2003년 공개초안(Exposure Draft 5)을 공표하고, 이에 대해 세계 각국 및 기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바 있는데, 위 내용은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가 2003년 10월 31일자로 IASB에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임. IAIS, 「IAIS comments on Exposure Draft ED5 Insurance Contracts」, IASB CL 112. (www.iasb.org)

o 제2단계에서는 널리 적용할 수 있고(robust) 지속가능한 보험사의 재무보고 모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IAIS는 IASB가 보다 폭 넓게 논의하고, 모든 제안에 대한 현장적용(field tests)을 통해서 회계모형이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정보이용자에게는 혜택이 지속되리라는 것을 확인해 줄 것을 촉구함.
- 2002년 6월에도 언급했지만 IAIS는 회계모형이 감독당국의 목적과 니드에 부응하고, 보험사업 맥락 안에서 적절하게 작동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언급함.

□ 금융자산의 가치평가

o 기업이 금융자산을 거래 범주(trading category)로 분류할 수 있는 선택권이란 기업이 모든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손익을 당기이익에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IAIS는 인지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수정사항은 기업이 보험사업을 지탱하기 위해 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받는 상황을 부분적으로만 다루게 됨.
- 즉 자산보유의 목적이 보험계약에 수반되는 보험부채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IAS 39는 오직 매칭목적의 경우에만 공정가치 적용을 허용해야 할 것임.
- 역사적 원가로 표시되는 보험부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산이 공정가치로 평가될 것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매칭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o 보험감독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제1단계 기간 중 측정기준을 서로 달리하는 자산-부채간의 불일치에 따른 부적절한 효과에 대한 것임.

- 특히, 보험감독자들은 최근에 보험사의 재무제표가 제2단계(안)이 표류하고 있는 동안 보험사의 경제적 실체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이에 IAIS는 IASB의 (안)설정의 근거를 검토하고 그 내용의 수정을 건의함.

o 부채와 자산을 대응시켜 보험사의 재무상태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자산과 부채의 가치가 변동함에 따른 변동성(volatility)을 보여주려는 것은 아닐 것임.

o IFRS와 IAS 39를 적용함에 따른 변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부채에 대응되는 만기가 고정된 자산(assets with fixed maturities)에 대하여 적용될 IFRS 초안의 자산측정 기준을 수정하여 상각원가(amortized cost)를 적용할 것을 제안함.

- 물론 이러한 수정기준의 남용을 방지하려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고, 제1단계에서 적절한 기준을 개발함에 있어 IAIS는 IASB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
- 이러한 기준은 제1단계에서 산업별로 상이한 측정기준을 초래하게 되지만, 제2단계(안)이 만들어지면 소멸될 기준임.

□ 충분한 지침(sufficient guidance)

o 보험산업에서 상품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제재무보고해석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이루어지는 지침 검토나 명확한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 이는 기준이 전세계에 조화롭게 실행되고, 해석할 수 있게 됨을 보장하는 것임.

나. IFRS 초안에 대한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의 의견

□ 이슈 1: 보험회계기준의 범위(scope)

< 별표 2-1 > IFRS 초안 - 보험회계의 범위

공개초안은 재보험을 포함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을 적용하고, 다른 IFRS의 적용을 받는 특정계약은 제외함. 또한 IFRS는 보험계약자의 회계처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공개초안은 IFRS가 보험계약을 판매한 보험사의 다른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며, 특히 다음의 (1)과 (2)에는 적용하지 않음. (1) 보험계약을 지탱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들 자산들은 기존의 다른 IFRS, 즉 IAS 39나 IAS 40 등에서 다루고 있음. (2) 보험계약은 아니지만 보험계약과 함께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 공개초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범위는 적절한가?, 적절하다면 왜? 공개초안은 날씨파생상품이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한 IAS 39의 범위에서 다루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적절한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o IAIS는 보험주체가 아닌 보험계약 중심의 회계기준에 동의함.
  - 그러나 보험주체들간에도 일관성이 있는 적용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게다가 모든 재무보고기준들(IFRSs)을 적용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전체 그림이 경제적 실체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o 마찬가지 이유에서 IFRS에서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요건을 배당특성(discretionary participating features)을 지니고 있는 금융계약에도 확장하여야 비교 가능한 계약들에 대해서 일관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음.

□ 이슈 2: 보험계약의 정의

< 별표 2-2 > IFRS 초안 - 보험계약의 정의

IFRS 공개초안은 보험계약을 계약의 일방(보험사업자)이 다른 일방(보험계약자)에게 사전에 정한 특정의 미래 사건(부보대상사건)이 보험계약자나 수익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했을 때 보험계약자나 수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다른 일방(보험계약자)으로부터 상당한 보험리스크(significant insurance risk)를 인수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 정의는 적절한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변경하여야 하는가?

o 보험계약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보험리스크의 수준

- IAIS는 제1단계 추진과정에서 보험계약과 금융계약의 경계에 속하는 계약에 대한 측정기준이 그 일관성을 찾기 힘들어 재무제표의 임의성(arbitrage)과 함께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의 결여가 초래될 수 있다고 봄.
- 더욱이 보험리스크의 중요성과 관련된 심도 있는 지침이 있어야 그런 회계의 임의성이 나타날 범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봄.

o 순수양로보험(pure endowment contracts)

- IAIS는 IFRS 초안에 따를 때 순수양로보험이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봄.
- 따라서 초안 시행지침이 예시(example)에서 순수양로보험을 보험계약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음.
- 생명보험의 조건부 연금(contingent annuities)이 조건을 달리한 순수양로보험의 단순한 합으로 볼 수 있기에 IFRS 초안이 순수양로보험은 금융계약으로, 조건부 연금을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은 일관성이 없음.
- IASB가 순수양로보험을 보험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IASB는 해당 계약에 관련된 리스크를 어떻게 공시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야 할 것임.

o 재보험계약

- IAIS는 초안 시행지침이 모회사의 리스크를 인수한 캡티브보험사(captive)가 획득한 재보험을 재보험으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연결재무제표에서 원수보험으로 간주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IAIS는 보험계약의 정의에 속하는 계약에 대해서만 재보험의 정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정의 밖의 보험계약에도 적용할 것인지가 IFRS에서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봄.

o 다른 금융상품과의 일관성

- 다른 국제회계기준들도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보험계약과 금융계약에 대해서는 일관된 회계처리 기준을 제공해야 함.
- 유사한 거래는 보험계약에 속하든 금융계약에 속하든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중요함. 다른 측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기준의 임의성을 초래하고 비교가능성을 결여하게 됨.
- 모든 실적배당형 상품은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당한 보험리스크의 전가와는 상관이 없음.

o 금융보증

- IAIS는 금융보증, 신용보험 등은 일관성이 있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 그러므로 IASB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특정 금융보증을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IFRS 초안에 포함시킨다는 결정에 대하여 IAIS는 환영함.

o 기타 이슈

- IAIS는 법적으로는 보험계약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조정과정을 통해서 보험계약자에게 모든 리스크를 전가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보험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초안 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음.

- IAIS는 IFRS 초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보험계약의 정의 중 '사전에 지정된(specified) 수익자'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모든 보험계약이 수익자를 사전에 지정하지는 않음.

□ 이슈 3 : 보험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embedded derivatives)

< 별표 2-3 > IFRS 초안 - 내재 파생상품

(1) IAS 39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기준에서는 기업이 일부 내재파생상품을 주 계약과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 요건은 보험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에도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됨:
(a) IFRS 초안의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또는
(b) 고정금액 또는 고정금액에 이자가 계산된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아닌 경우

또한 보험사는 다음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함:
(i) 해약환급금이 주식 또는 현물 가격 및 지수의 변동에 연동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에 내재된 풋옵션(put option), 즉 해약환급금 옵션, 그리고
(ii) 보험계약이 아닌 금융상품을 해약할 수 있는 옵션

일부 내재파생상품에 대해서 IAS 39 요건의 적용 배제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2) 상당한 보험리스크를 전가하고 있으나 금융특성이 두드러진 항목들은 IAS 39의 범위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
(3) IFRS 초안은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공시를 제안하고 있음. 이러한 제안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다른 변화가 필요한가?
(4) 내재파생상품이 IAS 39 요건에서 배제되어야 하는가?

o IAIS는 모든 내재파생상품을 보험부채의 측정에서 인식하여 그 경제적 실질가치와 관련하여 측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함.
  - 이 원칙은 보험계약에서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조차도 적용됨.
  - 그렇다고 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과 분리되거나 IFRS 초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평가방식에 IAIS가 동의하는 것은 아님.

□ 이슈 4 : IAS 8로부터 당분간 배제

< 별표 2-4 > IFRS 초안 - IAS 8의 적용 배제

(1) IAS 8 회계정책, 회계 추정 및 오류에 관한 기준은 IFRS가 어떤 항목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업이 사용할 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IFRS 초안은 보험사가 2007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다음 항목들에 대한 기존 회계정책 대부분에 대하여 IAS 기준들에 대한 예외로 하는 제안을 한 바 있음:
(a) 판매하고 있는 보험계약(여기에는 재보험계약도 포함)과
(b) 보유(가입한) 재보험계약.
이러한 예외의 허용이 적절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2) 한편 IFRS 초안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음
(a) 대재해 및 평형 준비금(catastrophe and equalization reserves; 비상위험준비금) 배제
(b) 손실인식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마련
(c) 보험사가 계약의무에서 벗어나거나 청산하지 않는 한 이를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유지하고 관련 재보험과 상계하지 말아야 함
이러한 제안들이 적절한 것인가? 아니라면 다른 대안은?

o 국제회계기준 제8호(IAS 8)에 대한 일시적 예외 (일몰조항)
- IAIS는 IAS 8의 적용을 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배제한 것에 동의함.

o 그러나 일몰조항의 유용성과 실무적용의 가능성이라는 시사적 측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음.
- IAIS는 2007년 1월 1일 이전뿐만 아니라 제2단계가 실행되기 전까지의 모든 기간에 걸쳐서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며,
- IFRS 초안의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배당특성을 지니는 금융계약에도 IAS 8의 적용 배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o 보험부채가 계약상 의무로부터 벗어나거나 의무를 청산하지 않고는 대차대조표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IAIS도 동의함.

□ 이슈 5 : 회계정책의 변경, IAIS의 공통의견이 없음

< 별표 2-5 > IFRS 초안 - 회계정책의 변경

IFRS 초안은 다음을 제시하고 있음:
(1) 보험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할 경우 보험사가 충족해야 할 조건들
(2) 보험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할 경우 보험사는 일부 또는 전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되는 금융자산의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에 반영됨.
이러한 제안이 적절한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 이슈 6 : 보험계약의 분리(unbundling)에 대해서는 IAIS의 공통의견은 없음

< 별표 2-6 > IFRS 초안 - 보험계약의 분리

IFRS 초안은 보험계약의 예치금(저축)에 해당하는 부분을 회계적으로 분리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이는 대차대조표의 자산과 부채의 누락을 피하고자 하는 것임.
(1) 분리가 적절하고 실제로 가능한 것인가? 아니라면 다른 대안은?
(2) 분리가 다른 경우에도 요구되는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왜 그러한가?
(3) 언제 분리가 요구되는 것이 명확한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가?

□ 이슈 7 : IAIS도 출재재보험의 감액기준 적용에 동의함.

< 별표 2-7 > IFRS 초안 - 재보험계약

IFRS 초안은 보험사가 재보험을 구매, 즉 출재했을 때 정상적인 보고로부터의 이탈을 제한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제안이 적절한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 이슈 8 : 인수합병 및 계약이전에서 얻어진 보험계약의 처리에 대한 IAIS의 공통의견은 없음.

< 별표 2-8 > IFRS 초안 - 기업합병이나 계약이전의 보험계약

IAS 22, 인수합병(business combinations)기준에서는 기업이 인수합병에서 얻은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IAS 22 개정을 위한 공개초안 제3호(ED 3) 인수합병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IFRS 초안에서도 위 요건에 대해서 보험자산과 보험부채를 배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인수된 보험계약을 다음의 두 구성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1) 판매한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측정된 부채 (2) 보험부채가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수한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공정가치를 나타내는 무형자산. 그 무형자산은 IAS 36 자산의 감액과 IAS 38 무형자산의 범위에서는 배제. 이후의 측정에서는 관련 보험부채의 측정과 일치하여야 함. 그러나 IAS 36과 IAS 38은 고객자산(고객명단 및 고객관계)에는 적용함. 이러한 고객자산은 인수한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부분이 아닌 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것임. 이와 같이 확장된 표시가 계약이전의 형태로 인수된 보험계약군에 대해서도 얻어질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제안이 적절한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 이슈 9 : 배당 특성

< 별표 2-9 > IFRS 초안 - 배당 특성

IFRS 초안은 보험계약이나 금융계약에 담겨진 배당 특성에 대하여 제한적인 측면만을 언급하고 있음. IASB는 이러한 특성을 제2단계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함. 이러한 제안이 적절한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o IAIS는 IASB가 제2단계에서 배당특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미할당잉여금의 부채 또는 자본 처리, 이중적 회계처리 금지를 논의하는 것을 지지함.

o 표현상의 명확성을 위하여
- ‘미래 보험계약자 급부(future policyholders benefits)’는 그 의미상 ‘보험계약자에게 미래에 지급될 급부(future benefits for policyholders)’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고,
- 재량적 배당 특성(discretionary participating features)은 법률적인 또는 감독상의 자율적인 배당 특성들이 정의에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함.

□ 이슈 10 : 보험계약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공정가치 공시

< 별표 2-10 > IFRS 초안 - 공정가치 공시

IFRS 초안은 보험사가 2007년부터 보험자산과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를 공시할 것을 요구함. 이러한 공시요구가 적절한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o IAIS는 IFRS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정가치 공시의 시행 시기를 지지하지 않음.
- 이는 제2단계가 성공적으로 수행된 이후에야 가능할 것임.
- 또한 위 시기는 마치 제2단계의 시한을 2006년으로 정해놓은 듯하나 그 시한은 충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o 그대신 IAIS는 IASB가 중요 기초율들과 산출에 채택된 방법론 등 가치중심 정보들의 공시를 촉진할 것을 제안함.

o IAIS는 공정가치에 대한 수량적 공시가 없더라도 현금흐름의 규모(금액) 및 시기와 불확실성에 대한 IFRS의 공시요건이 보험부채와 관련된 리스크와 특성에 대한 수량 정보를 일부 제공한다고 보고 있음.

o 또한 IAIS는 배당특성을 지닌 금융상품에 대한 부채에 공정가치 공시를 요구하는 것은 IASB가 그 가치측정 방식을 결정하기 이전에는 부적절하다고 봄.

□ 이슈 11 : 기타 공시

< 별표 2-11 > IFRS 초안 - 기타 공시 사항들

(1) IFRS 초안은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액, 그리고 현금흐름의 규모와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공시요건을 정하고 있음.

이러한 제안들은 수정되거나 삭제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더 자세한 공시가 필요한가?

※ 위 공시요건은 상당부분 기존 국제기준들의 공시요건들을 응용한 것이거나 그대로 차용한 것들임. 따라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면 다른 기준들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사한 공시들과 차별화해야 할 보험계약의 속성들을 열거해 주기 바람.

(2) 공시요건들은 매우 높은 수준(high level requirements)이어서 보험사가 그 수준을 어떻게 충족해야 할 지에 대한 시행지침으로 보완되고 있음.

이러한 제시가 적절한 것인가?

(3) 일시적인 방편으로, 보험사는 IFRS 초안이 적용되는 최초 보고년도말 이전의 5개년간의 사고 진전상황에 대한 공시를 할 필요가 없음.

이러한 일시적 예외는 어떠한가? 만일 바꾼다면 어떻게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o 공시요건의 수준

- IAIS는 IASB가 회사별 수준이 아니라 그룹수준에서 공시할 때 요구되는 구체적인 수준을 명시하여야 함(그룹수준은 개별 회사수준보다는 덜 상세할 것임)
- 전반적으로 IAIS는 그러한 공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음.

o 보험금진전(claim development) 정보의 공시

- 보험금진전 정보와 관련하여 시행지침에 예시를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말로만 서술하는 공시 요건은 이런 경우 매우 어려우므로 예시를 들어서 하는 것이 정보로써 가치가 있음.
- 시행지침에서 제시된 예시는 유용하지만, 두 가지 보완이 필요.

(1) 예시는 각 계약인수(언더라이팅) 연도별 보험금 추정치를 보여줌. 일부 사례에서는 각 사고년도별 보험금진전을 보여주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임. IAIS는 이러한 방식이 시행지침에서 언급되어야 한다고 봄.

(2) IAIS는 할인효과가 별도로 공시되어야 함에 동의함. 또한 보험금진전표에 대한 통화(환율)효과를 별도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이는 국제적인 영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에게 이슈가 될 것임.

o IAIS는 당분간 보험사들이 IFRS를 적용하는 최초 연도로부터 직전 5개년 보험금진전을 공시하지 않아도 됨에 동의함.

o IFRS는 보험사가 금리리스크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IAIS는 이 경우 자산과 부채를 IAS 32에서 제시하는 바처럼 자산그룹(class)별로 다루지 말 것을 제안함. 다만, 보험부채의 금리리스크에 대한 노출과 부채에 상응하는 자산의 리스크 노출 정도간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o IAIS는 IASB가 기초율 변동에 대한 손익과 자본의 민감도에 대한 공시요건과 기초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변동에 대한 손익과 자본의 민감도 공시요건을 설명해주었으면 함.

- 또한 위 두 요건이 중복될 경우 그 구분을 요청함.

□ 이슈 12 : 비금융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한 기업의 금융보증

< 별표 2-12 > IFRS 초안 - 금융보증

IFRS 초안은 비금융 자산이나 부채를 이전한 기업은 인수자에게 제공한 금융보증에 대하여 IAS 39,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IAS 39는 금융 자산이나 부채의 이전과 관련된 금융보증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음. IAS 39를 비금융 자산이나 부채의 이전에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o IAIS는 IFRS 초안에 동의하지만 보험부채(혹은 보험부채포트폴리오)의 이전과 관련하여 인수자에게 제공된 금융보증이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이 요건을 금융보증에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o IAIS는 실질적인 금융보증과 신용보험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IASB의 의견에 동의함.

- 신용보험은 파생상품이 아님. 많은 국가에서 신용보험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고유한 종목(a branch of its own)으로서 사업영위에 특별한 허가가 필요함.
- 한편으로는 헷지(hedge)상품이 아니며, 다른 한편으로는 내용상 헷지상품으로 이용되어서 보증금융상품을 가치평가 할 때 고려되어야 함.
- IASB는 보증가치의 변동이 헷지된 노출의 가치 변동과 상쇄된다는 것과 효과성에 대한 시험을 할 필요가 없음을 확신하고 있음.

o 그러나 일부 금융보증이 보험계약으로서 회계처리될 수도 있다는 사실과 요건간에는 불일치가 있음.

□ 이슈 13 : 기타 의견

o IAIS는 투자형 계약과 관련하여 신계약비 이연은 제1단계에서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봄.

[부록 3] IFRS 4. Insurance Contract의 내용[42)]

□ IASB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을 제정하면서 국제기준에 대한 긴급한 수요와 국제적 공감대를 갖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는 광범위한 논의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인식간에 균형을 기하고자 했음.

o 특히 완전히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완성은 EU와 몇몇 국가들이 정한 2005년 개시 시한까지는 어려운 것이었음.

o 따라서 IFRS 4는 IASB 보험프로젝트의 제1단계만을 기초로 제정되었음.

- 보험계약에 대한 공시 개선, 인식과 측정 관행에 대한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음.

o 제2단계에서 IASB는 보험회계에 대한 개념적이고 실무적인 이슈들을 보다 폭 넓게 다룰 것임.

- 이러한 작업들은 2004년 2/4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며, 이를 위해 약 15명의 보험, 회계, 투자분석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작업반이 가동될 것임.
- 보험회계의 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앞으로도 수년이 걸리겠지만 IASB는 작업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조만간 IFRS 4를 개정할 것임.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 4의 주요 내용

□ IFRS 4의 주요 요구사항

o 범위(scope): IFRS는 재보험을 포함하여 보험사가 판매하는 모든 보험계약과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 적용됨.

---

42) IASB는 2004년 3월 국제보험회계기준을 처음으로 제정 공표하였음.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정식명칭은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재무보고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임. 부록의 내용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2004년 3월 31일의 보도자료 내용임.

- 보험계약과 관련 없는 기타 자산과 부채에는 적용되지 않음. 여기에는 IAS 39의 적용대상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도 포함됨.
- 또한 보험계약자의 회계처리에도 적용되지 않음.

o 정의(definition): IFRS는 보험계약을 "계약의 일방(보험사업자)이 다른 일방(보험계약자)에게 사전에 지정한 불확실한 미래 사건(부보대상사건)이 보험계약자나 수익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했을 때 보험계약자나 수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다른 일방(보험계약자)으로부터 상당한 보험리스크(significant insurance risk)를 인수하는 계약"으로 정의함.

o 회계정책: IFRS는 보험사에 대하여 다른 국제기준의 적용을 일시적으로(제1단계 기간 중) 일부 배제함. 그러나 IFRS는 다음 사항들을 강제 또는 금지하고 있음:

(1) 보고일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계약에 대한 예상 사고의 보험준비금은 금지. 대표적인 사례가 대재해 및 평형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임.

(2) 보험부채의 적정성분석(adequacy test)과 재보험에 대한 감액기준(impairment test)을 요구.

(3) 보험계약상 의무로부터 벗어나거나 청산, 소멸되기 전까지는 대차대조표에 부채를 유지.

o 회계정책의 변경: 보험사는 회계정보의 적정성(relevance)이나 신뢰성(reliance)의 어느 하나가 훼손되지 않으면 다른 하나가 제고되는 경우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음. 그러나 비록 회계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 해도 다음 관행들은 도입될 수 없음.

(1) 비할인기준의 보험부채 측정

(2)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시장참가자의 수수료로 유추할 수 있는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의 미래 투자관리수수료로 계약상 권리를 측정하는 것.

(3) 자회사들의 보험부채에 대한 다양한 회계정책의 사용.

o 보험부채의 재측정: 반면 보험사는 현행 시장금리(및 다른 기초율들)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기마다 정해진 보험부채를 재측정하는 회계정책을 도입할 수 있음.

o 신중성(prudence): 보험사가 과도한 안전할증(excessive prudence)을 제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없고, 이미 충분한 할증을 고려하여 부채를 측정했다면 추가적인 할증을 도입해서는 안됨.

o 미래투자마진(future investment margin): 보험사가 미래투자마진을 반영하는 회계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재무제표의 적정성과 신뢰성이 하락했다는 반증임.

o 자산분류: 보험사가 보험부채의 회계정책을 변경할 경우 일부 또는 모든 금융자산을 재분류하여 공정가치로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임.

o 기타 이슈: IFRS는

- 보험사는 내재파생상품이 보험계약의 정의를 만족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별도로 떼어내 공정가치로 평가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함.
- 보험사는 일부 보험계약의 예치금(저축) 부분을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함.
- 이른바 “shadow accounting" 관행의 적용가능성을 허용함.
- 인수합병이나 계약이전에서 인수된 계약에 대한 확장표시를 허용함.
- 보험계약 및 금융상품의 배당특성에 대해서 제한된 측면만을 언급함.

o 공시: IFRS는 재무정보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의 공시를 요구함.

-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금액.
- 보험계약에 나타날 미래 현금흐름의 규모 및 시기와 불확실성.

o 2005년부터 적용.

보험개발원(KID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96-1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이후의 보험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 최용석, 1996.4

96-2 보험회사 종합금융기관화 전략 / 오영수, 1997.2

96-3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자동차보험 무보험 운전자 문제를 중심으로 / 서영길, 박중영, 1997.3

96-4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7.3

96-5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김규승, 양성문, 장강봉, 1997.3

96-6 분리계정제도의 도입타당성과 세부도입방안 / 이근영, 박태준, 장강봉, 1997.3

96-7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I) : 총론 / 오영수, 이경희, 김란, 1997.3

96-8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방안 : 예정이율 및 계약자배당을 중심으로 / 정봉은, 노병윤, 목진영, 1997.3

96-9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효율화 방안 / 김규승, 박홍민, 장재일, 1997.3.

97-1 보증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 이희춘, 신동호, 이기형, 이준섭, 1997.5.

97-2 남북 경협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 독일 모델을 중심으로 / 신동호, 안철경, 조혜원, 1997.11

98-1 보험산업의 M&A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M&A 추세 및 유인을 중심으로 / 김호경, 박태준, 1998.1

98-2 생명보험회사의 적정성장에 관한 연구 / 이원돈, 이승철, 장재일, 1998.2

98-3 생명보험 예정사업비의 합리적 결정에 관한 연구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8.2

98-4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Ⅱ) : 연금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8.3

98-5 주요국의 새로운 보험판매채널 활용사례분석 및 국내사의 운용전략 / 정재욱, 정영철, 한성진, 1998.3

98-6 보험기업 경영진단시스템 :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김호경, 김혜성, 1998.3

98-7 퇴직연금 계리 및 재정 / 성주호, 김진억, 1998.6

98-8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및 운용방안 / 이원돈, 이승철, 장강봉, 1998.10

99-1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Ⅲ) : 의료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9.2

99-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 / 이득주, 서영길, 장동식, 1999.3

99-3	국민연금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접근방안 / 성주호, 김진억, 1999.3
99-4	손해보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대한 연구 / 신동호, 이희춘, 차일권, 조혜원, 1999.3
99-5	생존분석기법(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생명보험 실효·해약 분석 / 강중철, 장강봉, 1999.3
99-6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 :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 박일용, 안철경, 1999.7
99-7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 및 대응방안 / 노병윤, 장강봉, 1999.12
99-8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 안철경, 박일용, 1999.12
2000-1	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 및 운영방안 연구 / 이희춘, 조혜원, 2000.3
2000-2	ART를 활용한 손보사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신동호, 2000.3
2000-3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요인과 투자행동 / 목진영, 2000.3
2000-4	생명보험상품의 손익기여도 분석 / 노병윤, 장강봉. 2000.3
2000-5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안철경, 박일용, 오승철, 2000.3
2000-6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 김헌수, 2000.6
2000-7	보험회사 지식자산의 가치측정모형 연구 / 이도수, 김해식. 2000.8
2000-8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명보험사의 상품개발전략 / 류건식, 이경희. 2000.9
2000-9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랜드 분석 / 동향분석팀. 2000.11
2000-10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 정홍주. 2000.12
2001-1	사이버시장 분석 및 향후 과제 / 안철경, 장동식, 20001.1
2001-2	OECD 국가의 생명보험산업 현황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정세창, 권순일, 김재봉, 2001.1
2001-3	손해보험 종목별 투자수익 산출 및 요율 적용 방안 / 이희춘, 조혜원, 2001.1
2001-4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분석 / 류건식, 이경희, 2001.3
2001-5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에 관한연구 / 신동호, 안철경, 박홍민, 김경환, 2001.3
2001-6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 리스크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도수, 2001.4
2001-7	보험회사 CRM에 관한 연구 : CRM 성공요인 및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안철경, 조혜원 2001.8
2001-8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운용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재현, 이경희, 2001.10
2001-9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 / 박홍민, 김경환, 2001.10

2001-10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민영장기간병보험 발전방안 / 김기홍, 2001.12
2001-11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 김해식, 2001.12
2002-1	국내외 보험사기관리 실태 분석 / 안철경, 김경환, 조혜원, 2002. 3
2002-2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 박홍민, 이경희, 2002. 3
2002-3	보험회사 리스크 감독 및 관리방안 연구 / 류건식, 정석영, 이정환, 2002. 5
2002-4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 / 신문식, 김경환, 2002. 5
2002-5	생명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천일영, 신동현, 2002. 10
2002-6	생명보험회사의 고객유지전략 / 신문식, 장동식, 2002. 10
2002-7	방카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 정세창,박홍민,이정환, 2002. 12
2002-8	생명보험사 보험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 류건식,신동현,배윤희, 2002. 12
2003-1	민영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 오영수, 이경희, 2003. 3
2003-2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방안 / 박홍민, 권순일, 이한덕, 2003. 3
2003-3	보험회사 사이버마케팅의 활용전망 / 신문식, 장동식, 2003. 3
2003-4	생명보험사 RAS체제에 관한 연구 / 류건식, 김해식, 정석영 2003. 7
2003-5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교육방안 / 이기형, 조재현, 2003.11
2003-6	보험설계사 조직의 개편 방안 / 신문식, 이경희, 이정환, 2003.12

■ 연구조사자료

96-1	주요국의 보험브로커제도 및 관련법규 현황 / 김기홍, 김평원, 정봉은, 유지호, 1996.2
96-2	독일 보험감독법, 1996.2
96-3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 이기형, 김란, 조혜원, 1996.10
96-4	캡티브 보험사 설립에 관한 연구 / 김평원, 오평석, 안철경, 조혜원, 1996.12
96-5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불능력규제 / 이재복, 1997.3
97-1	국제보험세미나 (IIS) 발표 논문집 (제 33차), 1997.7
97-2	태평양보험회의 (PIC) 발표 논문집 (제 18차), 1997.9

98-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 (Ⅰ) / 김영욱, 차일권, 1998.2
98-2	손해보험 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8.3
98-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8.3
98-4	보험회사의 적대적 M&A와 대응수단에 관한 연구 / 김호경, 박상호, 장재일, 1998.8
98-5	MAI협상의 진전과 국내보험산업에의 시사점 / 정영철, 한성진, 1998.8
98-6	보험회사의 리스크 증대와 대응 / 이기형, 박중영, 장기중, 1998.10
98-7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Ⅱ) : 의료사고위험을 중심으로 / 신동호, 차일권, 1998.11
99-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Ⅲ) : 임원배상책임보험 / 엄창회, 1999.1
99-2	최근 우리국가 보험산업의 현황 및 제도 변화 / 김호경, 박상호, 1999.3
99-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9.3
99-4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 김해식, 1999.6
99-5	우리국가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 외국사례 및 생명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정봉은, 이승철, 1999.7
99-6	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 이원돈, 정봉은, 신동호, 안철경, 1999.7
99-7	지진재해와 지진보험 : 일본의 지진보험을 중심으로 / 이상우, 1999.7
99-8	주요국의 보험계리인제도 / 최용석, 노병윤, 1999.8
99-9	생명보험 계약심사제도 / 장강봉, 1999.11
99-10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2000.2
2000-1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 엄창회, 2000.3
2000-2	보험사의 지식경영 도입방안 / 김해식, 2000.3
2001-1	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 이경희, 2001.1
2001-2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보험2본부, 2001.1

2001-3 지방채보험 제도 도입방안 / 안철경, 엄창회, 2001.3

2001-4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 조사 / 동향분석팀, 2001.3

2001-5 종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박홍민, 이한덕, 2001.6

2001-6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 / 보험1본부, 2001.11

2001-7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I) / 보험연구소, 2001.11

2002-1 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 보험연구소, 2002.3

2002-2 국내 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 김진선, 안철경, 권순일, 2002.9

2003-1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 2003.3

2003-2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 천일영, 주민정, 신동현, 2003.3

2004-1 200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 2004.3

2004-2 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 / 김해식, 2004.6

■ 정책연구자료

97-1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분석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7.10

97-2 '9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7.11

98-1 '9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8.11

99-1 200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9.11

99-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 중심으로- / 이승철, 1999.12

2000-1 200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0.10

2001-1 신용보험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동호, 김경환, 2001.1

2001-2 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1.11

2001-3 세계금융서비스 산업의 겸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 정세창, 권순일, 2001.12

2002-1 200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2.11

2003-1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 안철경, 신문식, 이상우, 조혜원, 2003.7

2003-2 200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3.12

■ 연구논문집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Insurance Business Report

1호	일산생명 파산과 시사점, 1997.5
2호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 정재욱, 정영철, 1997.10
3호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 이기형, 김평원, 1997.11
4호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과 보험산업 / 김호경, 1997.12
5호	멕시코 보험산업의 IMF 대응사례와 시사점 / 정재욱, 1998.3
6호	주요국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제 / 양성문, 1998.3
7호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 이기형, 장기중, 1998.5
8호	구조조정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 상품, 마케팅, 자산운용, 재무건정성을 중심으로 /노병윤, 안철경, 이승철, 1999.2
9호	보험산업에서의 정보기술(IT)의 활용 : 손해보험 중심으로 / 최용석, 1999.3
10호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대책 / 박중영, 1999.3
11호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 양성문, 김해식, 1999.3
12호	최근의 환경변화와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강중철, 목진영, 1999.10
13호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 오영수, 최용석, 이승철, 1999.12
14호	중국의 WTO 가입과 보험시장 개방 / 정회남, 2002.4
15호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 동향분석팀, 2002. 9
16호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 조혜원, 2003.5
17호	유럽보험회사 파산사례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 / 신동현, 2003.5
18호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 이기형, 조재현, 2003.8

■ 영문발간물

1호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2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3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4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5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CEO Report

2000-1 일본 제일화재의 파산에 따른 국내 손보산업에의 시사점 / 양성문, 김혜성, 2000.5
2000-2 일본 제백생명의 파산에 따른 국내 생보산업에의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0.6
2000-3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개선방안/김재현, 2000.10
2000-4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활동과 기대효과 / 안철경, 2000.11
2001-1 부동산권리보험 도입현황과 시사점 / 신문식, 권순일, 2001.8
2001-2 자동차보험 가격경쟁 동향과 향후과제 / 서영길, 기승도, 2001.8
2001-3 일반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 이희춘, 문성연, 2001.10
2002-1 금융재보험의 도입과 향후과제 / 보험연구소, 2002.4
2002-2 PL법 시행에 따른 PL보험 시장전망과 선진사례 시사점 / 손해보험본부, 2002.6
2002-3 종신보험상품의 예상 리스크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2.6
2002-4 주 5일 근무제와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본부, 2002.9
2002-5 CI(Critical Illness)보험의 개발과 향후 운영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2.10

2002-6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2.10

2003-1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 장기손해보험팀, 2003. 2

2003-2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 3

2003-3 인구의 노령화와 민영보험의 대응 / 오영수, 2003. 6

2003-4 국가재해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보험제도 운영방향 / 손해보험본부, 2003. 7

2003-5 생명보험산업에서의 경험통계 활용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3. 7

2003-6 OECD의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논의와 시사점 / 동향분석팀, 2003. 8

2003-7 퇴직연금 시장 전망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 류건식, 남효성, 박홍민, 2003.12

2004-1 자동차보험 예정기초율 연구 및 전략적 시사점/자동차보험본부, 2004. 2

2004-2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제휴 성공전략 / 오영수, 2004. 2

2004-3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향후 과제 / 생명보험본부, 2004. 2

2004-4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원인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자동차보험본부, 2004. 2

정기간행물

■ 월간

○ 보험통계월보

■ 계간

○ 보험동향

■ 계간

○ 보험개발연구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구분 내용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300,000원	150,000원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연구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10~15회/년) ・조사연구자료(5~10회/년) ・정책연구자료(3~5회/년)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보험개발연구(3-4회) ・보험동향(계간)		-연구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10~15회/년) ・조사연구자료(5~10회/년) ・정책연구자료(3~5회/년)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보험개발연구(3-4회) ・보험동향(계간)	- 간행물별 년간 구독료는 다음과 같음 ・보험개발연구 (연간 3회4회 30,000) ・보험통계월보 (월간 50,000) ・보험동향 (계간 20,000)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보 -영문발간자료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개발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368-4230,4407 팩스 : 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67-25-0014-382) / 한미은행 (110-55016-257)예금주 : 보험개발원
- 지로번호 : 6937009

가입절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 Knowledge Center에서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보험개발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을지서적, 서울문고, 세종문고 부산: 영광서적

저 자 약 력

김해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선임연구원
(haeskim@kidi.or.kr)

연구조사자료 2004-2

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

발 행 일 2004년 6月 日
발 행 인 임 재 영
편 집 인 오 영 수
발 행 처 보 험 개 발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02) 368-4000
인 쇄 소 신 우 씨 앤 피

ISBN 89-5710-010-5 93320 정가10,000원